

관세연구 23-03

WTO 상소기능 정지에 따른 MPIA의 주요내용 및 합의

2023. 12.

고지현·노영예·양지영

연구진

연구책임자

고 지 현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노 영 예 관세연구팀 선임연구원

양 지 영 관세연구팀 연구원

목 차

I. 서론	1
II. WTO 상소기구	4
1. 상소기구 및 상소 절차	4
가. 상소기구	4
나.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	6
2. 상소기구의 정지 배경	20
가. 배경	20
나. 기능 정지의 문제점	21
3. 상소기구에 대한 각국의 입장	22
가. WTO	22
나. 미국	23
다. EU	26
라. 그 외 국가들	26
III. MPIA 다자간 상소중재약정	28
1. MPIA 개관	28
가. 임시상소중재 절차 초안	28
나. 임시상소약정	30
2. DSU 제25조에 따른 합의 내용	32
가. MPIA 관련 합의 본문	32

나. 임시상소중재 절차(DSU 제25조에 따른 중재규칙)	36
다. 중재인 명부의 구성 및 관련 절차	41
3. MPIA 관련 현황	42
가. 일반 현황	42
나. 관련 분쟁 현황	43
다. 기타 규정 개정	50
IV. MPIA 관련 사례	56
1. 튀르키예 의약품 분쟁 사례	56
가. 개요	56
나. 의의	61
2. 콜롬비아-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산 냉동 감자튀김 분쟁 사례	62
가. 개요	62
나. 의의	68
V. 요약 및 소결	75
1. 요약	75
가. WTO 상소기구의 부재	75
나. MPIA의 함의	76
2. 소결	78
가. MPIA 참여 여부 및 예외규정 관련	78
나. 제13차 WTO 각료회의	80
참고문헌	82
부록	86
부록 1. 브라질 개정법 전문 (LEI N ^o 14.353, DE 26 DE MAIO DE 2022)	86
부록 2. WTO 가입국 및 MPIA 가입국	90

표 목차

〈표 III-1〉 MPIA 사례 현황	48
〈표 IV-1〉 MPIA 상소 절차 기간	69

I. 서론

- 1995년 WTO 설립 이후 지난 25년여 동안 WTO 분쟁해결제도는 국제사회의 가장 활발한 분쟁해결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옴
- 그러나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2017년,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며 2019년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그 기능이 마비되었음¹⁾
 - 분쟁해결기구는 상소기구 위원 임명 시 총의(consensus rule)에 따르므로 WTO 회원국²⁾ 중 하나라도 임명에 반대할 경우 위원의 임명 또는 연임이 불가능함
 -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기의 만료로 상소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음
- WTO 분쟁해결 절차는 양자협의 후 1심으로 분쟁해결 패널 판정, 2심으로 상소 심리로 순으로 진행되며 1심 패널 판정에 대해 패소국이 상소하는 경우 패널 판정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잃고 보류됨³⁾
 - 해당 상황에서 상대국이 1심 판정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할 경우 승소국은 패널에서 판결된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하며, 상소심리 진행 시까지 교착상태에 이르게 됨
- 2019년 5월 EU는 기능이 마비된 상소기구를 임시 대체하기 위해 DSU(Dispute

1) KITA,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SESSIONID_KITA=43FCAA3EE1FB78F9389E00C0427E756.Hyper?no=1826139 검색일자: 2024. 2. 26

2) 부속서 2의 회원국 참조

3) KOTRA,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90&pNttSn=187253 검색일자: 2024. 2. 29

Settlement Understanding,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이하 DSU) 제25조하의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이하 :MPIA)의 운영절차 초안을 회람하여 회원국들의 참여를 제안하였음

- MPIA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중국, 캐나다 등 15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3월 출범했으며, 2023년 10월 일본의 가입으로 2024년 현재 총 26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 미국 정부는 MPIA를 중국-EU 간 약정(China-EU Arrangement)으로 칭하며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은 2020년 6월 5일 WT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공식적으로 MPIA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현재 MPIA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 반면 MPIA의 주축인 EU는 2021년 2월 13일 새로운 EU 무역집행규제(Regulation (EU) No. 2021/167)를 발표하면서 MPIA 비참여국이 EU와 WTO 분쟁에서 패소한 후 상소 제기 시 EU가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2022년 12월 21일 첫 MPIA 가입국 간의 중재합의가 체결되었으며 이는 EU와 콜롬비아 간 냉동 감자튀김 분쟁에 대해 최종 판결로서 상소 제기 90일 이내에 39쪽의 짧은 보고서로 판정을 갈음하며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음⁴⁾
 - 미국은 상소기구의 문제점으로 상소 제기 후 90일이 초과되는 판정 지연 및 장황한 판결 보고서 등을 지적해옴
- 그 밖에 MPIA 비참여국이었던 튀르키예가 MPIA 참여국인 EU의 제소에 따라 DSU 제25에 따른 MPIA 원칙을 존중하는 중재합의를 체결하였으며 튀르키예는 중재 판정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DSB에 통보하였음

4) KITA,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A13836A515CE6773E631F826BD3C2432.Hyper?no=1829575 검색일자: 2024. 1. 8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MPIA의 적용 사례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됨
 - 2024년을 기준으로 MPIA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으며 특히 현재 MPIA에 계류 중이거나 체결이 완료된 사례 등 현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 조유미(2023)에서는 상소기구 개혁 논의 동향 및 상소기구의 제도적 가치에 대해 서술하였음
 - 이천기·강민지(2020)에서는 MPIA에 대한 배경, 2020년 상의 적용 현황, MPIA DSB 통보 본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예상준·엄준현(2020)에서는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소기구 개혁을 통해 해소될 시 WTO 회원국의 통상정책과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권영민(2015)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을 직접 참여와 제3자 참여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본 연구는 제I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었음
 - 제II장에서는 WTO의 상소기구 절차, 상소기구의 정지 배경, 상소기구 정지에 따른 문제 및 각국의 입장에 대해 조사하였음
 - 제III장에서는 MPIA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DSU 제25조에 따른 MPIA 합의 내용(구체적인 상소 절차), 분쟁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 제IV장에서는 MPIA에 따른 판정사례로 튀르키예 의약품 분쟁 및 콜롬비아-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산 냉동 감자튀김 분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음
 - 제V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소결로 마무리하였음

II. WTO 상소기구

1. 상소기구 및 상소 절차

가. 상소기구

- 1995년 1월 WTO 설립 이후 WTO 분쟁해결제도는 지난 28여년 동안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⁵⁾
 - WTO 분쟁해결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성과로 WTO가 설립되면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제도가 생긴 것에 의의가 있음

- GATT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해결 기능의 문제점이 있었음
 - GATT상에서 제22조 및 제23조 등 분쟁해결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GATT 규정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⁶⁾
 - 분쟁처리 기간의 지연, 패널 보고서의 효과적 집행의 어려움
 - GATT 분쟁해결은 단일 조항에 법적 근거를 두었음
 - 조정과 협상의 기능을 수행할 뿐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었음

- WTO 분쟁해결제도는 GATT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됨⁷⁾

5) WTO,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thewto_e.htm, 검색일자: 2024. 1. 29

6) WTO,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gatt47_01_e.htm, 검색일자: 2024. 1. 29

7) 이효영, 『WTO 상소기구 제도의 현황과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3, p. 2

- GATT 분쟁해결제도의 전반적 개선의 필요성에 협의를 함
 -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규정 제정을 위하여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의 개선 강화를 모색함
- GATT 분쟁해결제도와 비교하면, WTO는 회원국들의 분쟁해결제도에서 강제관할권을 수용하게 되고, 이행과 보복에 의해 당사국들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생김⁸⁾
 - GATT 1994에서 발전된 분쟁해결제도에는 패널 보고서에 대한 상소 가능이라는 변경 규정을 도입함
 - WTO 분쟁해결제도에 적용되는 절차는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Annex) 2에 수록된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에 따름⁹⁾
 - WTO 설립 이후 622건의 분쟁이 제소되었고, 350건 이상의 판결이 내려짐¹⁰⁾
 - 모든 분쟁에서 패널 혹은 상소기구 판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분쟁 절차 이전 혹은 분쟁 절차 진행 중 기간에서의 양자적 협의를 통해 회원국들의 분쟁을 해결함¹¹⁾
 - WTO 분쟁해결 절차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서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WTO 규범의 준수와 이행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해옴¹²⁾

8) 위의 책

9)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su_e.htm, 검색일자: 2024. 1. 20

10)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e.htm#dsb, 검색일자: 2024. 1. 20

11) 장재량,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상소기구를 중심으로)」, 2022

12) 위의 논문

나.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

- WTO 분쟁해결규칙 협정문은 27개조 및 4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음¹³⁾
 - 적용범위는 제1조 및 부록 1, 2에 명시되어 있으며 WTO 설립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을 포함함
-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는 패널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 상황 감독, 보복조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을 가짐¹⁴⁾

1) 일반규정(제3조)

-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판정은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음¹⁵⁾
 - 대상국의 협정상 권리와 의무에 따라 사안의 만족스러운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회원국이 대상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하여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야 함
- 중재판정을 포함하여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안에 대한 해결책은 대상협정에 합치되어야 하며, 그 협정에 따라 회원국에 발생하는 이익에 무효, 침해,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
 - 상호 합의된 해결책은 분쟁해결기구,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통지되며, 회원국은 그 해결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음

13)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mofa.go.kr/>, 검색일자: 2024. 1. 20

14)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조 실시규정

15)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3조 일반규정

- 분쟁해결제도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임
- 대상협정에 대한 위반으로 판정이 된 경우, 조치의 철회를 확보해야 함
 - 보상 규정의 경우 임시적으로 적용되며 즉각적인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임
 - 의무의 적용 정지는 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이며,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 사례로 간주됨
- 조정의 요청 및 분쟁해결 절차의 활용이 투쟁적인 행위로 의도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됨¹⁶⁾
 -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회원국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
 - 별개의 사안에 대한 제소 및 반소는 연계되어서는 안됨
- 대상협정의 협의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협의요청에 대해서만 적용됨¹⁷⁾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1947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나 대상협정의 선행 협정에 따라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분쟁의 경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직전에 유효한 관련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가 계속 적용됨
 - 분쟁에 대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거나 완전히 집행되지 못한 분쟁에도 적용됨
- 개발도상 회원국이 선진국에 대하여 제소하는 경우, BISD 14S/18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¹⁸⁾
 - 패널이 규정된 기한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제소국과 합의된 경우 그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16)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3조 일반규정

17)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3조 일반규정

18)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3조 일반규정

2) 협의(제4조)

- WTO는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사법적 과정을 거치는 대신 분쟁 당사국들 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장려함¹⁹⁾
- 분쟁 당사국은 당사국끼리 상호합의가 없다면,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협의에 응해야 함
 - 당사국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협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 개최를 요청한 회원국은 직접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러한 모든 협의요청은 협의요청 회원국에 의하여 분쟁해결기구 및 관련 이사회와 위원회에 통보됨²⁰⁾
 - 모든 협의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며, 협의요청 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치의 명시 및 제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협의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회원국은 사안에 대해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해야 함
- 협의의 결과,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협의 당사자가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했다고 공동으로 간주하는 경우, 제소국은 60일 기간 중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부패성이 있는 물품의 경우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당사국은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함²¹⁾
 -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제

19)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4조 협의규정

20)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4조 협의규정

21)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4조 협의규정

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분쟁 당사자와 패널 및 상소기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절차의 진행을 빠르게 해야 함
- 협의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문제점과 이익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함²²⁾
- 당사국이 아닌 제3자 국가가 실질적인 무역상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협의요청 문서가 배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회원국 및 분쟁해결기구에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통보할 수 있음
 - 이러한 회원국은, 협의요청을 받은 회원국이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에 동참함
- 주선, 조정 및 중개는 분쟁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취해지는 절차임
 - 절차의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가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아니함²³⁾
- 분쟁 당사자는 언제든지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개시되고 종료될 수 있음
 -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가 종료 시,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제소국은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을 허용한 후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과정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국은 60일의 기간 중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분쟁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는 패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수 있음²⁴⁾

22)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4조 협의규정

23)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5조 주선, 조정 및 중개규정

24)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5조 주선, 조정 및 중개규정

-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직권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역할을 함²⁵⁾

3) 패널(제6-11조)

-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총의(consensus)에 의한 패널 설치 반대가 없다면, 패널이 설치됨²⁶⁾
 - 최소한 10일 전에 공고 후, 15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개최됨
 - 패널 설치는 서면으로 요청되며 협의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문제가 된 특정 조치를 명시하며,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문을 제시해야 함
 - 제소국이 표준위임사항과 상이한 위임사항을 갖는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에는 제안하고자 하는 특별위임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패널은 분쟁 당사자가 패널 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의 위임사항을 받음²⁷⁾
 -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한 문제를 조사하고, 분쟁해결기구가 동 협정에 규정된 권고나 판정을 내리기 위한 조사결과를 작성함
 - 패널은 분쟁 당사자가 인용하는 모든 대상협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함
 - 패널 설치 시 분쟁해결기구는 분쟁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패널의 위임사항을 작성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 작성된 패널의 위임사항은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됨
 - 표준위임사항이 아닌 다른 위임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25)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5조 주선, 조정 및 중개규정

26)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6조 패널설치규정

27)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7조 패널의 위임사항규정

- 패널 위원은 본인이 속한 정부가 분쟁 당사자인 경우, 패널의 위원이 될 수 없음
-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이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의 속한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적용됨
-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 설치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패널 구성은 회원국에 신속히 통보됨
- 사무국은 분쟁당사자에게 패널 위원 후보자를 제의함
 - 분쟁당사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패널위원 후보자를 거부하면 안됨
- 패널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 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무총장은 협정의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국과 협의 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패널위원을 임명함²⁸⁾
 -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이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국에 이와 같이 이루어진 패널의 구성을 통보함
- 패널위원은 정부 대표나 기구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함²⁹⁾
 - 따라서 회원국은 패널에 계류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패널위원에게 지시를 내리지 아니하며, 개인 자격인 패널위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분쟁 시 개발도상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개발도상 회원국의 인사를 포함해야 함
- 2개 이상의 회원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복수의 제소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단일 패널을 설치할 수 있음

28)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8조 패널구성규정

29)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8조 패널구성규정

- 단일 패널은 별도의 패널이 설치되어 제소 내용을 조사하였을 경우에 분쟁 당사국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사작업을 체계화하고 조사 결과를 분쟁해결기구에 제시해야 함
- 일방 분쟁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관련 분쟁에 관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함³⁰⁾
 - 각 제소국은 다른 제소국의 서면입장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다른 제소국이 패널에 자기 나라의 입장을 제시하는 때 참석할 권리를 가짐
-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복수의 제소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패널이 구성되는 경우, 각각의 패널에서 패널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³¹⁾
- 분쟁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분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협정상의 다른 회원국(제3자)의 이해관계는 패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됨³²⁾
 -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 회원국은 패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서면입장을 패널에 제출할 기회를 가짐
 - 제3자 국가의 서면입장은 분쟁 당사자에게 전달되며 패널 보고서에 반영됨
 - 제3자는 제1차 패널 회의에 제출되는 분쟁 당사자의 서면입장을 입수함
 - 만일 제3자가 이미 패널 과정의 대상이 되는 조치로 인하여 대상협정에 따라 자기 나라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분쟁해결 절차에 호소할 수 있음
- 패널은 분쟁의 사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그 협정의 일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함

30)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9조 복수제소자를 위한 절차규정

31)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9조 복수제소자를 위한 절차규정

32)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2조 패널절차규정

- 분쟁 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작성해야 함

4) 패널절차(제12-14조)

- 패널절차는 패널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면서 질이 높은 패널보고서를 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을 부여하여야 함³³⁾
- 분쟁 당사자와의 협의 후 패널위원은 패널의 구성 및 위임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후로부터 1주일 이내에 패널 과정에 관한 일정을 확정해야 함³⁴⁾
 - 패널 과정에 관한 일정 결정 시 패널은 분쟁 당사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함
- 패널은 분쟁 당사자가 서면입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정확한 마감시한을 설정해야 하며, 분쟁 당사자는 동 마감시한을 준수하여야 함³⁵⁾
- 각 분쟁 당사자는 패널과 그 밖의 분쟁 당사자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서면입장을 사무국에 제출함³⁶⁾
 - 패널이 일정 확정 시 분쟁 당사자와 협의 후 분쟁 당사자가 제1차 서면입장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제소국은 피소국보다 먼저 제1차 서면입장을 제출해야 함
 - 제1차 서면입장을 순차적으로 제출하기로 한 경우, 패널은 피소국의 입장 접수기한을 정확히 설정해야 함
 - 이후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입장은 동시에 제출되어야 함

33)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2조 패널절차규정

34)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2조 패널절차규정

35)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2조 패널절차규정

36)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2조 패널절차규정

- 분쟁 당사자가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패널은 서면보고서 형식으로 자신의 조사결과를 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함
 - 이 경우 패널보고서는 사실에 관한 조사 결과, 관련 규정의 적용가능성 및 자신이 내린 조사결과와 권고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함
 - 분쟁 당사자 간에 해결책이 발견된 경우 패널보고서는 사안의 간략한 서술과 해결책이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데 국한됨

- 패널의 구성 및 위임사항에 대하여 합의로부터 최종보고서가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되는 날까지 일반적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면 안됨³⁷⁾
 - 긴급한 사안의 경우, 패널은 3개월 안에 패널 보고서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패널이 6개월 이내에 또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패널은 지연사유를 서면 통보해야 함³⁸⁾
 - 서면 통보 시, 예상되는 소요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패널 설치로부터 회원국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9개월을 초과하면 안됨

- 개발도상 회원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는 설정된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할 수 있음
 - 만일 관련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 당사자가 협의종료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분쟁 당사자와의 협의 후 관련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 및 기간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또한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한 제소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패널은 개발도상 회원국이 자기 나라의 논거를 준비하고 제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함

- 당사자가 개발도상국인 경우, 패널보고서는 개발도상 회원국이 제기한 대상협정의 일

37)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2조 패널절차규정

38)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2조 패널절차규정

부를 구성하는 개발도상 회원국을 위해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어떤 형태로 고려하였는지를 명시적으로 적시해야 함³⁹⁾

- 패널은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 12개월 안에서 기한을 정지할 수 있음
 - 명시된 기한은 작업이 정지되는 기간만큼 연장됨
 - 패널의 작업이 12개월 이상 정지되는 경우에는 패널 설치 권한이 소멸됨

- 패널은 모든 개인 또는 기관에게 정보 및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을 구하기 전에 당국에 통보해야 함⁴⁰⁾
 - 패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국은 언제나 신속히 그리고 충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함
 - 비밀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곳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는 공개될 수 없음

-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않음⁴¹⁾
 - 패널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분쟁 당사자의 참석 없이 작성이 됨
 - 개별 패널위원이 패널 보고서에서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함

5) 잠정검토단계(제15조)

- 패널은 반박 서면입장 및 구두 주장을 심리한 후 자신의 보고서를 통해 기간 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함⁴²⁾

-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패널은 서술 부분과 패널의 조사결과 및 결론을 모두 포함하는 잠정보고서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함

39)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2조 패널절차규정
 40)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3조 정보요청권리규정
 41)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4조 비공개성규정
 42)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5조 잠정검토단계규정

- 분쟁 당사자는 패널이 정한 기간 내에 잠정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최종보고서가 회원국에 배포되기 전에 잠정 검토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 일방 분쟁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분쟁 당사자와 서면 논평에 명시된 문제에 관하여 추가적인 회의를 개최함
 - 논평기간 내에 어떤 분쟁 당사자도 논평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잠정보고서는 최종 패널 보고서로 간주되며 신속히 회원국에 배포함
- 최종 패널 보고서의 조사결과는 잠정검토단계에서 이루어진 주장에 대한 토의를 포함함
- 패널 보고서의 검토 기간은 회원국에 배포된 날로부터 20일임⁴³⁾
- 패널 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개최되기 10일 이전에 이의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회원국에 배포해야 함⁴⁴⁾
- 분쟁 당사자는 분쟁해결기구의 패널 보고서에 대한 심의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권리를 가짐
- 패널 보고서는 회원국에 배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채택됨⁴⁵⁾
- 일방 분쟁 당사자가 상소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패널 보고서는 상소 절차 종료 후까지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을 위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이러한 채택 절차는 회원국이 패널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면 안됨

43)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6조 패널보고서의 채택규정

44)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6조 패널보고서의 채택규정

45)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6조 패널보고서의 채택규정

6) 상소심의(제16-20조)

- 분쟁해결기구는 상설상소기구를 설치하며 상소기구는 패널 사안으로부터의 상소를 심의해야 함⁴⁶⁾
 - 상소기구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7인 중에 랜덤으로 구성하여 국적에 상관없이 3인이 하나의 사건을 담당해야 함
 - 상소기구 위원은 교대로 사안을 담당하며 작업절차에 의해 교대가 결정됨

- 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구 위원 임기는 4년이며, 각 상소기구 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⁴⁷⁾
 -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충원되며,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상소기구 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임명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상소기구 위원의 직을 수행함

- 상소기구는 법률, 국제무역 및 대상협정 전반의 주제에 대하여 입증된 전문지식을 갖춘 인정된 권위자로 구성됨⁴⁸⁾
 - 상소기구 위원은 어느 정부와도 연관될 수 없으며, 상소기구 위원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을 대표함
 - 상소기구 위원은 어느 때라도 단기간의 통지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활동 및 그 밖의 관련 활동을 숙지해야 함
 - 상소기구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의 심의에 참여하면 안됨

- 분쟁당사자만이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상소할 수 없음⁴⁹⁾
 - 제10조 2항에 따라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분쟁해결기구에 통지

46)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7조 상소심의규정
 47)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7조 상소심의규정
 48)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7조 상소심의규정
 49)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7조 상소심의규정

한 제3자는 상소기구에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상소기구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일방 분쟁 당사자가 상소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구가 보고서를 배포하는 날까지의 절차는 60일을 초과하면 안됨
 - 상소기구는 60일 이내에 자신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보고서 제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서면으로 분쟁해결 기구에 고지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절차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됨
- 상소기구는 분쟁해결기구 의장 및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업절차를 작성하며, 작업절차는 회원국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됨
- 상소기구의 심의과정은 비공개이며, 상소기구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 및 행하여진 진술내용에 비추어 분쟁 당사자의 참석 없이 작성됨
 - 상소기구 보고서에 표명된 개별 상소기구 위원의 견해는 익명으로 함
- 상소기구는 제기된 각각의 문제를 상소 심의과정에서 검토하며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 결과와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음
- 상소기구 보고서는 회원국에 배포된 후 30일 이내에 자동채택됨⁵⁰⁾
 -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하지 않기로 총의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 한 분쟁당사국은 보고서를 무조건 수락해야 함
-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심의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일방 분쟁당사자만의 의사소통이 있어서는 안됨

50)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7조 상소심의를 규정

- 패널이나 상소기구에 제출되는 서면입장은 비밀로 취급되나 분쟁 당사자는 이를 입수할 수 있음⁵¹⁾
 - 분쟁 당사자가 자기 나라의 입장에 관한 진술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함
 -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패널이나 상소기구에 제출한 정보로서 비밀이라고 지정한 경우 이를 비밀로 취급함
 - 분쟁 당사자는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서면입장에 포함된 공개 가능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함

-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조치가 대상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에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함⁵²⁾
 - 자신의 권고에 추가하여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 패널과 상소기구는 자신의 조사결과와 권고에서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없음

-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분쟁해결기구가 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의 채택을 심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9개월임⁵³⁾
 -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추가로 소요된 시간은 이 기간에 합산됨

51)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8조 상소기구와의 의사소통규정

52)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9조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53)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0조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시한규정

2. 상소기구의 정지 배경

가. 배경

- WTO의 분쟁해결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기능이 2019년 12월 11일을 기점으로 정지됨⁵⁴⁾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WTO 분쟁 해결의 상소기구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었음⁵⁵⁾
 -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정책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제도를 언급하며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⁵⁶⁾
 - 2019년 2월 25일 개최된 WTO DSU 회의에서 미국은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에 반대함
 - 그동안 상소기구가 WTO 협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분쟁해결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였고, 그로 인해 WTO 회원국의 이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 연장 및 신규 위원 선임 절차를 거부함
- 2019년 12월 10일에는 상소기구 위원 중 3명 중 2명이 임기가 만료되어 정족수 미달로 상소 사건을 진행할 수 없게 됨
 - WTO 상소기구 위원은 7명이며 그중 3명이 하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음
 - 분쟁해결기구는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할 때 결정은 총의(consensus rule)로 함⁵⁷⁾
 - 하나의 국가라도 임명에 대해 반대를 하면 부결이 되어 상소기구 위원은 임명이나

54)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appellate_body_e.htm, 검색일자: 2024. 1. 29

55) 이효영, 『WTO 상소기구 제도의 현황과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3, pp. 18~19

56) 이천기·서진교·김지현,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26, 2019. 12, p. 4

57) 위의 논문

연임이 불가능함

- 2020년 11월 30일에는 마지막 한 명 남은 상소기구 위원마저 임기가 만료되어 상소 사건을 담당할 위원이 없음⁵⁸⁾
-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패널 절차를 마친 당사국들은 상소를 제기하며 최종 판결을 무기한 연장시켰음

나. 기능 정지의 문제점

- 패널 1심은 개시 및 진행 가능하나, 상소심은 새로 개시될 수 없음⁵⁹⁾
 - 더 이상 패널위원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상소심 개시가 불가능함
 - 패널 판정에 대해 분쟁당사국 일방이 상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소송 건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음
- 상소심 개시가 불가능하여 인해, 1심을 패소한 당사자는 판정 내용에 대해 일종의 거부권을 가지게 됨⁶⁰⁾
 - 당사자 중 일방이 분쟁해결기구에 상소 제기를 한다면 패널 판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패널의 판정에 불만을 가진 분쟁당사국은 상소를 이용할 수 있음⁶¹⁾
- 패널 보고서에 대해 분쟁당사국 중 일방이 DSU 제16조 제4항에 따라 상소를 결정할 경우, 해당 패널 보고서는 DSB에서 채택될 수 없음⁶²⁾
 -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상소도 진행되지 못하

58)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appellate_body_e.htm, 검색일자: 2024. 1. 29

59) 이천기·서진교·김지현,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26, 2019. 12, p. 7

60) 위의 논문

61) 위의 논문

62) 이효영, 『WTO 상소기구 제도의 현황과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2, pp. 18~19

므로, WTO 소송절차 자체가 사실상 정지되게 됨

- 그간 상소기구 작업절차와 관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원의 경우에도 임기 만료 전에 배정받은, 계류 중인 상소 건에 대해 심리를 해왔음⁶³⁾
- 상소기구 기능 정지는 상소심 단계에서만 문제가 아니며, WTO 분쟁해결제도 전반의 기능 정지됨⁶⁴⁾
 - 현재 계류 중인 상소 건에도 상소심이 불가능해짐

3. 상소기구에 대한 각국의 입장

가. WTO⁶⁵⁾

- 상소기구 기능 개선을 위해 비공식 절차 내에서 촉진자로 활동하고 있는 DSB 의장은 일반이사회 결정 초안을 2019년 10월 15일 일반이사회에 제출함
- WTO는 미국이 문제로 삼는 상소기구 위원이 임기 만료 후에 상소심을 맡을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칙을 제안함⁶⁶⁾
 -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상소기구 위원의 신규 임명에 대해 임기가 만료되기 180일 전에 개시할 것을 제안함

63) 이효영, 『WTO 상소기구 제도의 성과와 한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2, p. 12

64) 이천기·서진교·김지현,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26, 2019. 12, p. 8

65) General Council, AGENDA ITEM 4 - INFORMAL PROCESS ON MATTERS RELATED TO THE FUNCTIONING OF THE APPELLATE BODY - REPORT BY THE FACILITATOR, H.E. DR. DAVID WALKER (NEW ZEALAND), JOB/GC/222, 15 October 2019, ANNEX: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 ON FUNCTIONING OF THE APPELLATE BODY, p. 5.

66) 위의 논문

- 상소기구 위원은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상소를 맡을 수 있음
- 변론 기일이 위원의 임기가 만료 전에 열린 상소의 경우 상소 심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상소기구는 DSU 제17조 5항에 의해 당사국이 상소 의사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90일 기간 이내에 상소기구 보고서를 발간함
 - 제기된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소의 건수가 많은 때에는 당사국들이 상소심 기한에 대해 90일에서 연장하는 데 동의할 수 있도록 제안함
- 국내법의 의미는 사실문제이므로 상소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
 - DSU에서 상소기구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대하여 적극적 심사를 할 수 없도록 제안함
- 당사국이 언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상소기구가 관여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권고적 제안이 없도록 제안함

나. 미국

-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2020년 2월 상소기구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함⁶⁷⁾
- 미국 USTR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⁶⁸⁾
 - 미국은 2019년 10월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일부 WTO 회원국이 상소기구를 독립적인 국제법원으로 또한 일부 상소기구 위원이 WTO 상소심 재판관(WTO appellate judge)으로 칭했다고 문제를 제기함

67) USTR,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0/february/ustr-issues-report-wto-appellate-body>, 검색일자: 2024. 2. 5

68) USTR,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ustr.gov/sites/default/files/Report_on_the_Appellate_Body_of_the_World_Trade_Organization.pdf, 검색일자: 2024. 2. 5

- 상소기구 지위와 역할 해석에 대해 WTO 분쟁해결규정에 근거가 없다고 함
- 미국은 상소기구 위원이 임기 만료 후에도 상소심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함⁶⁹⁾
 -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원이 상소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소기구 규정을 문제삼고 있음
 - 지금까지는,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원도 상소기구의 승인이 있으면 임기 만료가 되더라도 임기 기간 동안 맡게된 상소심을 완료함
- 미국은 DSU 제17조 5항에 따라 상소심에 대해 최대 90일의 심리기한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함⁷⁰⁾
 - 상소심의 90일 심리기한의 경우, 최근 분쟁들이 복잡하고 상소기구의 늘어난 업무로 인해 2011년부터 상소기구 심리기한이 지켜지지 못함
 - 미국은 상소기구가 기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비판함
- 미국은 상소기구가 분쟁의 국내법 사실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반대함⁷¹⁾
 - 상소심은 사안에 따라 분쟁당사국의 국내법·국내조치의 의미(사실문제)의 패널 판단에 대해 검토를 했음
- 미국은 상소기구가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에 반대함⁷²⁾
 - 상소기구의 법적 견해 제공
 - 부수적 의견을 상소기구 보고서에 포함하는 관행
 - 당사국들에 의해 제소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검토
 - 상소기구가 사법 적극주의를 이용하여 DSU와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

69) USTR,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0/february/ustr-issues-report-wto-appellate-body>, 검색일자: 2024. 2. 5

70) 상동

71) 상동

72) 상동

의무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함

- 미국은 상소기구가 자신의 보고서에 대해 선례로서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함
- 상소기구와 관련된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상소기구 위원의 신규임명을 저지할 것으로 전망됨⁷³⁾
- 미국은 WTO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 승인에 대해 거부 의견을 냄⁷⁴⁾
 - 2019년 11월에 미국은 상소기구의 예산액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020년 예산 승인을 거부하며, 할당할 예산을 줄일 것을 WTO 요구하며 예산안에 동의하였음
 - 또한 상소기구 위원의 보상체계에 대해, 현재 체계하에서는 상소 위원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상소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함
- WTO의 의사결정은 총의에 의해서 결정되나 미국의 영향력이 큰 편임
 - WTO 연간 예산에서 미국은 WTO 회원국 중에서 11%의 비중을 차지하므로 가장 높은 편임
- 2019년 11월 25일 미국은 WTO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되 상소기구의 예산을 삭감하여 운영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안을 제시함
 - EU, 중국, 인도, 튀르키예는 상소기구의 운영 약화로 인해 상소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산 삭감에 동의하지 않음
- 상소기구의 운영에 700만달러 이상 책정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020년 예산안이 WTO 예산행정 위원회에서 합의되었고, 예산안은 12월에 승인되었음⁷⁵⁾

73) 이천기·서진교·김지현, 「WTO 상소기구 기능 정치: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26, 2019. 12, p. 6

74) 위의 논문

75) 위의 논문

다. EU

- EU를 포함한 21개 WTO 회원국들은 DSU 제25조에 규정된 중재를 활용하여 기능 정치 상태에 있는 동안 상소기구를 대체함으로써 WTO 분쟁해결을 하고자 함
- EU는 2018년 9월 18일에 발표한 WTO의 현대화 보고서에서 상소기구 위원에 대해 제안⁷⁶⁾하였으며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소기구 위원이 임기 내에 맡게 된 상소 건에 관해 심리를 완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규칙 신설을 제안함⁷⁷⁾
 - 상소기구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상소기구 위원직을 비상임직에서 상임직으로 전환하며, 상소기구 사무국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제안함
 - 임기가 끝난 상소기구 위원이라도 상소기구의 승인과 분쟁해결기구에서의 통보를 통해 해당 상소 건과 관련해서 상소심을 완료할 때까지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규정을 제안함
- 상소심 기한의 연장에 대해 DSU 제17조 제5항에서 최대 90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소 기한에 대해 상소기구에 일정한 유연성을 줄 수 있도록 변경하자고 제안함
- DSU 제17조 제6항에 의해 상소기구가 심리하는 법률문제의 범위에 회원국 국내법에 대해 포함시키지 않음을 명확히 함

라. 그 외 국가들

- 미국을 제외한 다른 WTO 회원국들은 미국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있음⁷⁸⁾

76) EC,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eu-and-wto_en, 검색일자: 2024. 1. 12

77) 이천기·서진교·김지현, 「WTO 상소기구 기능 정치: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26, 2019. 12, p. 11

- 중국은 EU·인도와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⁷⁹⁾
 - 3개 회원국 공동의견서에는 상소기구 위원 임기는 6~8년으로 연장하며 재임은 할 수 없는 것을 제안함
 - 상소기구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위원 수를 7~9명으로 늘리고, 비상임직의 경우 상임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상소기구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 만기 후 2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상소기구 위원이 새로 선출하기까지 상소기구 위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함
 - 상소기구 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임기 만료 전에 자동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함

78) 위의 논문

79) 위의 논문

III. MPIA 다자간 상소중재약정

1. MPIA 개관

가. 임시상소중재 절차 초안

- 2018년 11월 23일 참여국들은 분쟁 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이해의 특정 조항 개정제안서에 대해 WTO 일반 이사회의 회람을 요청하였음⁸⁰⁾
 - 참여국은 EU,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인도, 노르웨이, 스위스, 한국, 호주,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멕시코임
 - DSU 제17조에 대한 수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상소기구의 제안에 대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절차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국들은 상소기구가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상소기구는 상소 진행 중 제기된 각 문제를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루어야 함

- EU는 2019년 5월 16일 임시상소중재 절차에 관한 초안(Interim Appeal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 25 DSU, Draft 16.05.2019)⁸¹⁾을 회람하고, 공식적으로 WTO

80) WTO,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9-DP.aspx?language=E&CatalogueIdList=249918&CurrentCatalogueIdIndex=0&FullTextHash=371857150&HasEnglishRecord=True&HasFrenchRecord=True&HasSpanishRecord=True 검색일자: 2024. 1. 15

81) WTO Plurilaterals, <https://worldtradelaw.typepad.com/files/eu-ab-proposal.pdf>, 검색일자: 2024. 1. 9

회원국들에 상소기구의 대안으로서의 임시상소중재(Interim Appeal Arbitration)를 제안하였음

- 임시상소중재 절차에 관한 초안은 분쟁 당사국들이 사전에 양자 간 임시상소중재약정을 체결하고, 당사국 사이에서는 DSU 제25조(중재)에 따른 중재 제도를 상소심의 대체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⁸²⁾
 -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를 중간 상소중재 절차로 사용하여 DSU 제16.4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소를 추진하지 않지만 중재인에게 적절한 행정적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 또한 DSU 제17조에 따른 상소 검토 관행뿐만 아니라 모든 실질적 및 절차적 측면을 가능한 유사하게 적용하고자 함
 - 상소중재 절차에 따라 DSU 제25조에 따라 중재인 역할을 하는 전직 상소기구 구성원 3명이 상소를 심리함
 - 중재인은 DSU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거 상소기구 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며, 중재위원의 경우 상소기구 사무국으로부터 행정적 또는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동일한 회원국의 두 회원이 동일한 사건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재 기간 중 언제든지 상소인은 중재인에게 통지하여 상소를 철회할 수 있음
 - 통지는 패널에도 통보되어 DSU 제12조 제12항에 따라 패널 절차를 재개해 달라는 당사국들의 공동 요청으로 간주됨

- 특정 분쟁에서 상소중재 절차를 운영하기 위해 캐나다와 EU는 본 서한의 부록에 명시된 중재 합의를 체결하고 패널 설치 이후 60일 이내에 DSU의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합의를 통보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음
 - 상소중재의 결과는 분쟁 당사국에 구속력이 있으며 WTO DSU상에 규정되어 있는 이행 및 보복조치 승인 절차에 따라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

82) 상동

- 초안을 바탕으로 한 약정은 EU와 캐나다⁸³⁾, EU와 노르웨이⁸⁴⁾ 간에 각각 체결되었음⁸⁵⁾
- 임시상소중재 절차는 상소기구의 기능을 임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중재 결과의 법적 구속력 여부, 상소기구 사무국의 부재로 인한 행정적 지원 부재 등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 운영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⁸⁶⁾

나. 임시상소약정

- 2020년 1월 24일 EU, 한국, 중국,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브라질 등 17개 WTO 회원국들은 DSU 제25조에 의거하여 분쟁 해결의 대안으로서 허용하고 있는 임시상소중재 절차를 다자적으로 적용하는 ‘임시상소약정(interim appeal arrangement)’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하였음⁸⁷⁾
- EU와 캐나다, EU와 노르웨이가 양자 합의를 통해 ‘임시상소중재(interim appeal arbitration)’ 방안의 추진을 WTO DSB에 알린 후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복수국가 간 체결이 가능하기 위해 다자적으로 확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 양자 합의에 의한 상소중재 절차를 활용하게 될 경우 거대경제 회원국들의 압박으로 시장규모가 작은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회원국 간 힘의 논리가 상소중재 절차에 적용되는 경우 과거 GATT 체제하의 분쟁해결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음
- 2020년 3월 27일 EU와 WTO의 다른 15개 회원국은 현재 WTO 상소기구의 마비에

83) JOB/DSB/1/Add.11, 25 July 2019

84) JOB/DSB/1/Add.11/Suppl. 1, 21 October 2019

85) BKL Legal Update,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DateFrom=&searchDateTo=&orderBy=orderByNew&pageIndex=1&whichOne=NEWSLETTER&menuType=law&lawNo=&expertNo=&newsletterNo=5433&memberNo=&fieldNo=&lang=ko> 검색일자: 2024. 1. 9

86) 이효영, 『WTO 상소기구 제도의 현황과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3, pp. 18~19

87) 위의 책

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결정하였음⁸⁸⁾

- 다자간 임시상소약정은 일반적인 WTO 상소 규칙을 반영하며 WTO 상소기구가 완전히 기능하지 않는 한 가입을 원하는 모든 참여국 간 적용될 수 있음
 - 2020년 3월 기준 참여국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EU, 과테말라, 홍콩, 중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우루과이로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가입하였음
 - 해당 합의에서는 이를 통해 다자간 무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분쟁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0년 4월 30일, EU를 포함한 20개 WTO 회원국으로 구성된 그룹은 새로운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의(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설립과 WTO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해당 메커니즘을 사용할 의사를 DSB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음⁸⁹⁾
- 2020년 4월 기준 참여국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EU, 과테말라, 홍콩, 중국, 아이슬란드,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위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임
 -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함한 WTO 상소중재 절차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측면을 보존하고 복제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회원국들은 또한 WTO 상소기구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고 기구가 기능을 회복하는 즉시 MPIA의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음
- 실질적으로 MPIA는 정치적 합의로서 MPIA 당사국 간에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동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88)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538 검색일자: 2024. 1. 15

89) WTO Plurilaterals, https://wtoplurilaterals.info/plural_initiative/the-mpia/ 검색일자: 2024. 1. 9

- MPIA 당사국과 관련된 두 개의 사건이 WTO에서 발생할 경우 당사국들은 DSU 제25조에 따라 WTO 분쟁해결기구에 공동 합의를 제출해야 함
- 이는 분쟁이 상소 단계에 도달할 경우 MPIA 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밝히고 당사국들이 이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정리를 같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DSU 제25조에 따른 합의 내용

가. MPIA 관련 합의 본문

- MPIA의 목적은 WTO의 분쟁해결제도의 규칙에 기반한 무역제도로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상소 단계가 그 본질적 특징의 하나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상소기구와 관련된 상황을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⁹⁰⁾
- WTO 회원국 전체와 협력하고, DSU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기능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선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패널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상소 검토를 통해 구속력 있는 성격과 두 가지 수준(1심, 2심)의 판결을 포함하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본질적인 원칙과 특징을 보존하고 WTO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보존하기 위해 DSU 제25조에 근거한 비상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의함
- DSB가 패널 보고서를 부정적 합의에 의해 채택함으로써 패널 단계에서 분쟁의 구속력 있는 해결의 가능성도 보존하고자 함
-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해석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회원국에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중재 판정은 해당 계약에 제공된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90) JOB/DSB/1/Add.12 서문

없다는 점을 재확인함

- 참가 회원국은 상소기구의 위원 부족으로 회원국 간 분쟁에서 DSU 제25조에 따른 임시 상소중재 절차를 따를 것이며 참여 회원국은 DSU 제16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⁹¹⁾
- 상소중재 절차는 상소 절차의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독립성, 공정성 등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DSU 제17조에 따른 상소 검토의 실제적 및 절차적 측면을 기반으로 함⁹²⁾
- 상소중재 절차에 따라 부속서 2의 참가국들에 의해 구성된 10명의 상설 상소 중재자 명부에서 선택된 3명의 상소중재인이 상소를 심리함⁹³⁾
 - 중재자 풀은 법률, 국제무역 및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의 주제에 대해 입증된 전문 지식을 갖춘 공인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며 그들은 어떤 정부에도 소속되지 않음
 - 직간접적으로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의 심리에 참여하지 않음
 - 중재자 명부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구성됨
 - 중재자 풀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분쟁을 처리할 중재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분쟁 당사국들은 합의하여 해당 분쟁에 적용되는 선택 절차에 따름⁹⁴⁾
- 중재자 명부의 구성원은 WTO 분쟁 해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MPIA에 따른 상소중재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받게 됨⁹⁵⁾
 - 의사결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해 중재자 명부의 구성원은 실행 가능한

91) JOB/DSB/1/Add.12 제1항, 제2항

92) JOB/DSB/1/Add.12 제3항

93) JOB/DSB/1/Add.12 제4항

94) JOB/DSB/1/Add.12 각주 1

95) JOB/DSB/1/Add.12 제5항

범위 내에서 해석, 실행 및 절차 문제를 서로 논의함

- 특정 분쟁에 대한 중재인 선정 시 DSU 제17조 제1항 및 순환원칙을 포함한 상소기구 작업절차 제6조 제2항⁹⁶⁾에 따라 상소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원칙과 방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짐⁹⁷⁾
 - WTO 사무총장은 선정 결과를 당사국과 제3자에게 통보함
 -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인 명부의 구성원 중에서 참여 위원의 국적이 아닌 사람은 선정이 제외됨⁹⁸⁾
 - 동일한 회원국의 두 위원이 동일한 사건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재인에게 관련된 책임의 성격을 고려하여 품질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행정적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임⁹⁹⁾
 - 참가국은 WTO 사무국 직원 및 패널을 지원하는 부서와 완전히 분리되어 업무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상소중재의 지원체제는 분리되어야 함)
 - 참여 회원국은 WTO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 구조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청함
- 참가국들은 당사국이 이 절차에 따라 상소를 결정할 경우 상소중재 절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MPIA가 다루는 분쟁에서 패널 절차에 대해 제한적으로 조정이 가능함¹⁰⁰⁾
 - 상소중재 절차에 따라 패널 보고서에 대해 상소하는 당사국이 없는 경우, 참여 회원국은 패널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회람될 것임

96) 분과를 구성하는 위원은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위원은 무작위 선발 원칙, 예측이 불가능할 것,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순환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함

97) JOB/DSB/1/Add.12 제6항

98) JOB/DSB/1/Add.12 각주 2

99) JOB/DSB/1/Add.12 제7항

100) JOB/DSB/1/Add.12 제8항

- MPIA는 해당 분쟁의 임시 패널 보고서가 이미 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분쟁의 이행 단계를 고려하여 두 개 국가 이상의 참여 회원국 간의 향후 분쟁에 적용됨¹⁰¹⁾
 - 이는 부록 1에 포함된 상소중재 절차를 임시적으로 보다 심화된 분쟁에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당사국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¹⁰²⁾

- 상소중재 절차의 개시를 위해 참가국은 본 통신의 부속서 1에 포함된 중재합의서(상소중재합의서)를 체결할 의사를 표시하고, DSU 제25조 제2항에 따라 패널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합의를 통지해야 함¹⁰³⁾
 - 본 통지일(2020년 4월 30일)에 패널이 이미 설립되었지만 중간 보고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은 현안 분쟁에 대해 본 통지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국이 상소중재합의를 체결하고 DSU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합의를 통지해야 함

- 특정 분쟁과 관련하여, 해당 분쟁의 당사국은 본 통지에 명시된 원칙을 저해하지 않고 상소중재계약에 명시된 절차에서 벗어나기로 상호 합의할 수 있음¹⁰⁴⁾

- 모든 WTO 회원국들은 본 통지의 승인을 DSB에 통보함으로써 MPIA에 가입할 수 있음¹⁰⁵⁾
 - 이러한 WTO 회원국이 당사국인 분쟁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국이 DSB에 통보한 날짜는 제9항 및 제10항의 목적상 본 통지일로 간주됨

- 참여 회원국은 본 통지일(2020년 4월 30일)로부터 1년 후에 MPIA를 검토할 것이며 검토는 MPIA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함¹⁰⁶⁾

101) JOB/DSB/1/Add.12 제9항
 102) JOB/DSB/1/Add.12 각주 3
 103) JOB/DSB/1/Add.12 제10항
 104) JOB/DSB/1/Add.12 제11항
 105) JOB/DSB/1/Add.12 제12항
 106) JOB/DSB/1/Add.12 제13항

- 참여 회원국은 DSB에 본 통지문에 대한 승인 철회를 통보함으로써 MPIA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¹⁰⁷⁾
 - MPIA가 탈퇴일에 계류 중인 분쟁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되며 제10항에 따라 체결된 상소중재 합의 또한 유효함
- MPIA는 상소기구가 다시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만 유효할 것으로 예상하나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10항에 따라 체결된 상소중재 합의는 계속 유효함¹⁰⁸⁾

나. 임시상소중재 절차(DSU 제25조에 따른 중재규칙)

- 분쟁에서 분쟁 당사국(이하 당사국)은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이해(DSU) 제25조 제2항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분쟁 당사국에게 발행된 최종 패널 보고서¹의 상소를 결정함¹⁰⁹⁾
 - 분쟁 당사국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를 시작할 수 있음
- DSU 제16.4조와 DSU 제17조에 따른 분쟁에서 상소기구가 상소를 심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중재가 개시될 수 있으며 합의된 절차의 목적상 당사국에 최종 패널 보고서를 발행한 날에 상소기구 위원이 3명 미만인 경우 적용될 수 있음¹¹⁰⁾
 - 이러한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DSU 제16조의 의미 내에서 최종 패널 보고서의 발행 예정일을 당사국들에게 45일 전까지 통지할 것을 패널에 요청함¹¹¹⁾
- 당사국들에 최종 패널 보고서 발행 후, 회원국들에 최종 패널 보고서가 회람이 예상되

107) JOB/DSB/1/Add.12 제14항

108) JOB/DSB/1/Add.12 제15항

109)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항

110) JOB/DSB/1/Add.12 부속서 1 제2항

111) JOB/DSB/1/Add.12 부속서 1 제3항

는 날짜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일방의 당사국은 패널 절차를 중단하도록 패널에 요청할 수 있음¹¹²⁾

- 당사국의 이러한 요청은 DSU 제12조 제12항에 따라 12개월 동안 패널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공동의 요청으로 간주함
- 정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제공할 것을 패널에 요청함
 - 패널의 작업 절차에 따른 최종 패널 보고서에 대한 기밀 해제
 - 상소장 제출 시 증재인에 대한 패널 기록 전송 : 상소기구 작업절차(Appellate Body Working Procedures) 제25조를 준용함¹¹³⁾
 - WTO의 작업 언어로 된 최종 패널 보고서를 당사국 및 제3자에게 전송함
- 당사국은 제6항 및 제18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널에게 패널 절차의 재개를 요청할 수 없음

□ 중재는 패널 절차의 정지 발효 후 20일 이내에 WTO 사무국에 상소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됨¹¹⁴⁾

- 상소 통지서에는 WTO의 실무 언어로 작성된 최종 패널 보고서가 포함되며 상소 통지는 패널 절차의 상대방 당사국과 제3자에게 동시에 통지되어야 함

□ 제2항에 따라 중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당사국들은 DSU 제16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패널 보고서가 DSB에 의해 채택될 수 있도록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함¹¹⁵⁾

112) JOB/DSB/1/Add.12 부속서 1 제4항

113) 상소장이 제출되면 WTO 사무총장은 패널 진행의 전체 기록을 상소기구에 전송해야 하며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a) 분쟁 당사국 및 제3자가 첨부한 서면제출, 반박자료 및 증빙자료
- (b) 분쟁 당사국 및 제3자와의 패널회의에서 제출된 서면변론, 해당 패널회의의 녹취 및 해당 패널 회의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 (c) 패널 또는 WTO 사무국과 분쟁 당사국 또는 제3자 간의 패널 분쟁 관련 서신
- (d) 패널에 제출된 기타 문서

114) JOB/DSB/1/Add.12 부속서 1 제5항

115) JOB/DSB/1/Add.12 부속서 1 제6항

- 중재인은 10명의 상설 상소중재자 명부에서 선정된 3명이며 DSU 제17조 제1항의 상소기구의 분할과 순환 원칙을 포함한 상소기구 작업절차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판부의 구성과 동일한 원칙과 방식으로 중재자 명부에서 선정됨¹¹⁶⁾
 - WTO 사무총장은 선정 결과를 당사국과 제3국에 통보할 것이며, 중재인은 재판장을 선출하며 중재인의 의사결정에는 상소기구 작업절차 제3조¹¹⁷⁾ 제2항이 준용됨

- 중재인은 해당 결정과 관련하여 중재인의 배타적 책임과 자유에 대한 편견 없이 다른 중재인 명부의 구성원 모두와 상소와 관련된 자신의 결정을 논의할 수 있으며 중재인 명부의 모든 구성원에게 상소와 관련된 문서가 송부되어야 함¹¹⁸⁾

- 상소는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는 법적 문제 및 패널의 법적 해석에 국한되며 중재인은 패널의 법적 조사에 의해 발견된 내용과 결론을 유지, 수정 또는 번복(uphold, modify or reverse)할 수 있음¹¹⁹⁾
 - 해당되는 경우, 중재 판정은 DSU 제19조에서 상정된 바와 같은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함(당사국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음)
 - 상소되지 않은 패널의 결과는 중재인 자신의 결과와 함께 중재 판정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 중재인은 판결의무에 대한 편견 없이 당사국이 제기한 분쟁해결에 필요한 문제만 해결해야 함¹²⁰⁾
 - 합의된 절차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중재는 DSU 조항과 상소 검토에 적용되는 기타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준용되며 특히 상소 검토를 위한 작업 절차와 상소 스케줄 및 행동 규칙이 포함됨¹²¹⁾

116) JOB/DSB/1/Add.12 부속서 1 제7항

117) 상소기구와 해당 부서가 합의에 의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다수결로 결정함

118) JOB/DSB/1/Add.12 부속서 1 제8항

119) JOB/DSB/1/Add.12 부속서 1 제9항

120)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0항

121)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1항

- 중재인은 당사국들과 협의한 후 상소 검토를 위한 상소기구 작업절차 제16조¹²²⁾에 따라 정당한 경우 상소 검토를 위한 작업 절차와 그에 제공된 상소 시간표를 조정할 수 있음¹²³⁾

□ 90일의 기간 내에 판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재인은 DSU 제11조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여를 근거로 청구를 배제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당사국에 제안할 수 있음¹²⁴⁾

○ 이러한 조치에는 페이지 제한, 시간 제한, 종료 날짜는 물론 필요한 심리 기간과 횟수에 대한 결정이 포함될 수 있음¹²⁵⁾

○ 중재인의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제안된 실질적인 조치에 동의하는 것은 관련 당국의 결정으로 함

○ 관련 당국이 제안된 실질적인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건의 심리 또는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¹²⁶⁾

□ 중재인들의 제안에 따라 당사국들은 중재판정 발급을 위한 90일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¹²⁷⁾

□ 당사국들이 중재 판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면, 이는 최종적인 판정으로서 DSB 관

122) (1) 상소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질서 있는 절차를 위해, 본 규칙에서 다루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DSU, 다른 적용 대상 계약 및 본 규칙과 불일치하지 않는 한 해당 상소의 목적만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으며 절차가 채택된 경우, 부서는 즉시 분쟁 당사자, 참가자, 제3자 및 제3참가자뿐만 아니라 상소기구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통지해야 함

(2) 예외적인 상황에서 본 규칙에 명시된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했을 시 명백하게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 참가자, 제3자 또는 제3참가자는 해당 부서에 문서 제출을 위해 본 규칙에 명시된 기간 또는 구두 심리 작업 일정에 명시된 날짜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요청이 승인되는 경우, 변경된 시간은 수정된 작업 일정의 분쟁 당사자, 참가자, 제3자 및 제3참가자에게 통보되어야 함

123)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2항

124)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3항

125)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4항

126) JOB/DSB/1/Add.12 부속서 1 각주 6

127)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2항

련 및 WTO 협정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채택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¹²⁸⁾

□ 제3자가 아닌 분쟁 당사국만이 중재를 시작할 수 있음¹²⁹⁾

- DSU 제10조 제2항에 따라 패널 앞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DSB에 통보한 제3자는 중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해당 내용에는 상소기구 작업절차 제24조¹³⁰⁾가 준용됨

□ DSU 제25조 제4항에 따른 중재판정은 DSU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함

□ 중재 중 언제든지 당사국들은 중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상소 또는 기타 상소를 철회할 수 있음¹³¹⁾

- 해당 내용은 중재인과 동시에 패널 및 제3자에게도 통지되어야 하며 다른 상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통지는 DSU의 제12조 제12항에 따라 패널 절차를 재개하라는 당사국들의 공동 요청으로 간주됨
 - DSU 제12조 제12항에 따라 패널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 중재인은 패널의 조사 결과와 결론을 전체적으로 통합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함¹³²⁾
- 상소 또는 기타 상소가 철회되는 시점에 다른 상소가 남아 있는 경우, 중재는 계속됨

128)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5항

129)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6항

130) (1) 제3자는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와 법적 논거를 담은 서면내용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소장 제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2) 서면 제출을 하지 않은 제3자는 21일의 동일한 기간 내에 구술청문회에 출석하여 구술진술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3) 상소 담당 부서에서 해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참가자들과 다른 제3의 참가자들이 구술청문회에서 취해야 할 입장을 통지할 수 있도록 제3의 참가자들은 서면 제출을 권장함
 (4) 제1항에 따라 서면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은 제3자는 구술청문회에 출석할 의사가 있음을 사무국에 통보하고 청문회에서 구술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보와 요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무국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131)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8항

132) JOB/DSB/1/Add.12 부속서 1 각주 7

- 당사국은 합의된 절차를 패널에 공동으로 통보하고, 해당되는 경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18항에 명시된 공동 요청을 승인하도록 패널에 요청해야 함¹³³⁾
- 패널에 의해 이러한 요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합의된 절차의 관련 조항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대안적인 절차 양식에 합의해야 함¹³⁴⁾

다. 중재인 명부의 구성 및 관련 절차

- 각 MPIA 참여 회원국은 MPIA DSB 통보 회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자 후보로 1인을 지명할 수 있음¹³⁵⁾
 - 확실성을 위해 현재 또는 전 상소기구 위원을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지명되면 부속서 제3항에 규정된 사전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음¹³⁶⁾
 - 중재자들은 법률, 국제 무역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협정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공인된 권한을 가진 자로 구성되도록 사전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됨¹³⁷⁾
 - 후보 지명기한 만료일로부터 최대 한 달간 사전선정위원회(WTO 사무총장, 분쟁 해결기구 의장, 상품·서비스·무역관련지식재산권 이사회 의장, 일반이사회 의장으로 구성)에서 사전선별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함
- 참여 회원국의 총의(Consensus)에 의해 중재자 명부를 구성하며 회람일(2020년 4월 30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자 명부 구성을 목표로 하여 분쟁해결기구에 해당 명부를 통보함¹³⁸⁾

133)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9항

134) JOB/DSB/1/Add.12 부속서 1 각주 8

135) JOB/DSB/1/Add.12 부속서 2 제1항 및 제2항

136) JOB/DSB/1/Add.12 부속서 2 제1항의 주

137) JOB/DSB/1/Add.12 부속서 2 제3항

138) JOB/DSB/1/Add.12 부속서 2 제4항

- 중재인 명부의 구성은 언제든지 참가국 전원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¹³⁹⁾
- 상소중재협정이 유지되는 한 참가국은 중재인 명부를 본 부속서에 설정된 절차에 따라 구성 후 2년 후부터 주기적으로 부분 재구성할 수 있음¹⁴⁰⁾
 - 중재자 명부 구성원이 사임하는 등 중재자 충원이 필요할 시 해당 절차가 재적용됨¹⁴¹⁾

3. MPIA 관련 현황

가. 일반 현황

- 2023년 10월 가입한 일본을 포함하여 2024년 현재 총 26개국이 MPIA에 참여하고 있음¹⁴²⁾
 - 참여국은 호주,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니카라과, 우크라이나, 베닌, 코스타리카, 일본, 노르웨이, 우루과이, 브라질, 에콰도르, 마카오, 중국, 파키스탄, 캐나다, EU¹⁴³⁾, 멕시코, 페루, 몬테네그로, 싱가포르, 칠레, 홍콩, 과테말라, 뉴질랜드, 스위스임
 - 에콰도르와 니카라과가 각각 2020년 5월 15일, 2020년 5월 19일에 MPIA 가입을 선언하였음
- 일본 외무성은 2023년 3월 10일 MPIA가 WTO 분쟁해결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다자무역체제의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MPIA에 참여¹⁴⁴⁾

139) JOB/DSB/1/Add.12 부속서 2 제6항

140) JOB/DSB/1/Add.12 부속서 2 제5항

141) JOB/DSB/1/Add.12 부속서 2 제6항

142) WTO Plurilaterals, https://wtoplurilaterals.info/plural_initiative/the-mpia/ 검색일자: 2024. 1. 15., 부속서 2의 가입국 참조

143) 총 27개 회원국

144) 일본 외무성, https://www.mofa.go.jp/press/release/press6e_000447.html 검색일자: 2024.

한다고 밝혔음

-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와 관련하여 분쟁 해결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MPIA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였음¹⁴⁵⁾
- 일본 정부는 MPIA의 참여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선언으로 지정학적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많은 국가가 보호주의로 기울어짐에 따라 과거의 약속을 존중하고 개방 무역 시스템과 경제 안보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이루겠다는 의지임을 밝혔음¹⁴⁶⁾
- 일본 철강산업협회는 MPIA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경제단체연합회는 MPIA 참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¹⁴⁷⁾
 - 특히 한국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을 비롯하여 인도, 스페인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SSB)에 대해 2004년 이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증인데, 일본은 이러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한국을 WTO에 제소하였음¹⁴⁸⁾

나. 관련 분쟁 현황

- 현재 콜롬비아의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산 냉동 감자튀김의 반덤핑 적용에 대한 분쟁 및 튀르키예의 의약품의 생산, 수입 및 마케팅에 관한 특정 조치에 대한 분쟁의 경우 DSU 제25조상 중재 절차를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
- DS583: EU는 의약품의 생산, 수입 및 마케팅에 관한 다양한 조치에 관해 튀르키예에 협의를 요청했음

1. 15

145) 무역협회,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1A67F19F20B4C5314B4D4D8799AD97D5.Hyper?no=1831672 검색일자: 2024. 1. 15

146) 일본 외무성, https://www.mofa.go.jp/press/release/press6e_000447.html 검색일자: 2024. 2. 1

147) Eastasia forum, <https://www.eastasiaforum.org/2023/05/14/japans-joining-mpia-an-outside-chance-to-boost-momentum-for-wto-reform/> 검색일자: 2024. 1. 15

148)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53_e.htm 검색일자: 2024. 1. 15

- 해당 사례의 경우 분쟁 당사국 중 튀르키예가 MPIA 참여국이 아님에도 DSU 제25조상 중재를 적용하였음
 - 2022년 3월 22일 튀르키예와 EU는 DSB에 해당 분쟁에서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를 적용할 것에 동의했다고 통보함
 - 2023년 5월 5일 튀르키예와 EU는 DSU 제21조 및 22조에 따라 합의된 절차를 DSB에 통보했으며 2023년 4월 25일, 튀르키예는 DSU 제21.6조에 따라 DSB에 중재 판정 준수 조치를 취했음을 고지함
 - 2023년 5월 19일 튀르키예는 DSB에 새로운 대체 의약품 상환 규정이 2023년 5월 12일에 발표되었음을 추가로 고지함
- DS591: EU는 콜롬비아가 벨기에산 조리 또는 보존(식초 또는 아세트산 제외), 냉동(냉동 감자튀김) 수입 감자에 대해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와 관련하여 콜롬비아에 협의를 요청함
 - 2020년 7월 13일, EU와 콜롬비아는 DSB에 해당 분쟁에서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를 적용할 것에 동의했다고 통보함
 - 2020년 8월 24일 패널이 구성되었으며 2022년 10월 10일 합의된 중재 절차에 따라 당사국들이 제출한 상소 통지서가 DSB에 회람되었음
 - 2023년 1월 20일 콜롬비아는 WTO 의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중재인의 판정을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23년 10월 10일, 콜롬비아와 EU는 DSU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합의된 절차를 DSB에 통보함
-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사례 중 모든 분쟁 당사국들이 MPIA 가입국으로서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를 합의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DS602: 호주는 호주에서 수입한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담긴 와인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에 협의를 요청함
 - 2021년 12월 16일 중국과 호주는 DSB에 해당 분쟁에서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를 적용할 것에 동의했다고 통보함
 - 호주는 호주에서 수입한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담긴 와인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조

치와 관련하여 중국에 협의를 요청함

- 중국의 패널 보고서-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WT/DS602)는 2023년 11월 10일에 배포될 예정이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 절차를 2024년 3월 31일까지 일시 중단하고 반덤핑 관세를 조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함¹⁴⁹⁾

- DS603: 중국은 중국산 특정 제품(풍력 타워, 딥드로잉 스테인레스 스틸 싱크대 및 철도 바퀴) 수입에 대해 호주가 부과하는 반덤핑 및 상계 조치와 관련하여 호주에 협의를 요청함

- 2022년 4월 28일, 호주와 중국은 DSB에 해당 분쟁에 대해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를 적용할 것에 동의했다고 통보함
- 패널은 2022년 9월 5일에 구성되었으며 DSB에 2024년 1분기 중에 당사국들에게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DS607: 2021년 11월 8일 브라질은 브라질의 특정 가금류 육류, 특히 소금에 절인 가금류 고기 및 후추를 곁들인 칠면조 고기 수입과 관련된 EU 조치와 관련하여 EU와 협의를 시작함¹⁵⁰⁾

- DS610: EU는 EU로부터의 상품 수입 및 수출, EU와 중국 간 서비스 무역에 대해 중국이 부과했거나 중국에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에 협의를 요청함

- 2023년 7월 4일, EU와 중국은 DSB에 해당 분쟁에서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를 적용할 것에 동의했다고 통보함
- 2023년 4월 18일,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이 동의한 두 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패널의 구성을 결정했으며 2023년 10월 13일에 패널 보고서 제출을 2024년 하반기로 연장함

149) KITA,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92CBF660E5FA26C5CDFA5C2EF4692956.Hyper?no=79904&siteId=2 검색일자: 2024. 1. 17

150) WTO 홈페이지상 DSU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내용은 검색일(2024.02.26.)기준으로 게시되어 있지 않으나 MPIA 공식홈페이지(https://wtoplurilaterals.info/plural_initiative/the-mpia/)에 중재합의된 진행사례로 게시되어 있음

- DS611: EU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에 협의를 요청함
 - 2023년 7월 4일 EU와 중국은 DSB에 해당 분쟁에서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를 적용할 것에 동의했다고 통보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로 패널 보고서 제출을 연장함

- 모든 분쟁 당사국들이 MPIA 가입국으로서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를 합의하였으나 해당 절차에 따라 상소하지 않았거나 철회 또는 결론 없이 분쟁이 마무리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DS601: 일본은 일본의 스테인리스강, 열연코일, 열연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에 협의를 요청함
 - 2023년 4월 11일, 일본과 중국은 DSB에 해당 분쟁에서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를 적용할 것에 동의했다고 통보함
 -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강과 열연코일, 열연판 제품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야기한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함
 -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에서 산정되었으며, 일본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 WTO에 제소하였으며 패널은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 상소가 수반되지 않고 분쟁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당사국들이 합의함
 - 2023년 8월 25일, 중국은 DSB에 권고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요청하였고 중국과 일본은 DSU 제21조 제3항의(b)에 따라 이를 9개월 10일로 합의했음을 DSB에 통보하였으며 강제조치의 시행은 2024년 5월 8일까지 유예됨
 - DS522: 브라질은 상업용 항공기 무역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캐나다와의 협의를 요청함
 - 2020년 5월 29일, 브라질과 캐나다는 DSB에 해당 분쟁에 대해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를 적용할 것에 동의했다고 통보함
 - 2021년 2월 18일, 브라질은 DSB 의장에게 제소 철회 결정을 통보하고 DSU 제

- 12.12조에 따라 패널이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도록 요청한 서신 회람을 요청함¹⁵¹⁾
- DS524: 멕시코는 멕시코에서 소비되는 신선한 아보카도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스타리카가 부당한 특정 조치와 관련하여 코스타리카에 협의를 요청함
 - 2020년 5월 29일,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는 DSB에 해당 분쟁에 대해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를 적용할 것에 동의했다고 통보하였으며 2021년 11월 26일,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는 DSB에 중재 절차의 개정판에 동의했다고 통보함
 - 2022년 4월 15일, DSB는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코스타리카가 멕시코산 아보카도에 부당한 제한을 가함으로써¹⁵²⁾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2022년 5월 31일 DSB는 패널 보고서를 채택했음¹⁵³⁾
 - DS537: 호주는 와인 판매에 관해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주에서 유지하는 조치에 관해 캐나다에 협의를 요청함
 - 2020년 5월 29일, 호주와 캐나다는 DSB에 해당 분쟁에 대해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를 적용할 것에 동의했다고 통보함
 - 2021년 4월 22일, 당사국들은 와인 판매에 대한 퀘벡 조치와 관련하여 호주의 청구권에 대해 연방 소비세 면제 등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했음을 패널에 공동으로 통지했으며¹⁵⁴⁾ 2021년 5월 25일, 패널은 회원국들에게 보고서를 회람하였음
 - DS589: 캐나다는 캐놀라 종자 수입을 중단 및 강화된 검사를 적용하는 조치에 대해 중국에 협의를 요청함
 - 2021년 9월 24일, 중국과 캐나다는 DSB에 해당 분쟁에서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를 적용할 것에 동의했다고 통보함

151)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22_e.htm 검색일자: 2024. 1. 16

152) Tridge, <https://www.tridge.com/ko/news/restrictions-continue-against-costa-rica-for-measu> 검색일자: 2024. 1. 16

153)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24_e.htm 검색일자: 2024. 1. 16

154)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37_e.htm 검색일자: 2024. 1. 16

- DSU 제12조 제12항에 따라 패널이 작업 재개를 요청받지 못했기 때문에 패널 구성 권한은 2023년 8월 31일부로 만료됨
- DS598: 호주에서 수입된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특정 조치에 관해 중국에 협의를 요청함
 - 2021년 7월 27일, 호주와 중국은 DSB에 해당 분쟁에서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를 적용할 것에 동의했다고 통보함
 - 2023년 8월 11일, 호주와 중국은 DSU 제3조 제6항에 따라 이 분쟁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상호 합의함

〈표 III-1〉 MPIA 사례 현황

중재판정 종료	분쟁 진행 중	중재판정 없이 종료 (단, 중재 절차 적용 동의)
DS591:155) 콜롬비아—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산 냉동 감자튀김에 대한 반덤핑 관세 2022년 12월 21일 MPIA 중재인 판결, 2023년 3월 14일 합의 회람	DS602:156) 중국—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2022년 3월 4일 WTO 패널 구성	DS601:157) 중국—일본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중재 절차 없이 2023년 7월 28일 패널 보고서 채택 2023년 8월 25일, 중국의 권고사항 이행 기간 요청 통보 2023년 10월 27일, DSU 제21.3 (b)조에 따라 양국의 합리적인 기간 통보(9개월 10일)
DS583:158) 튀르키예의 의약품의 생산, 수입 및 마케팅에 관한 특정 조치 2023년 4월 25일 튀르키예의 DSU 21.6조에 따른 중재 판정 준수 조치 이행 통보 2023년 5월 19일 튀르키예의 DSB에 새로운 대체 의약품 상환 규정 발표	DS603:159) 호주—중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2022년 9월 5일 WTO 패널 구성	DS522:160) 캐나다 상업용 항공기 거래에 관한 조치 2021년 2월 18일 브라질의 제소 철회

155)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91_e.htm 검색일자: 2024. 1. 17

〈표 Ⅲ-1〉의 계속

중재판정 종료	분쟁 진행 중	중재판정 없이 종료 (단, 중재절차 적용 동의)
	DS607: ¹⁶¹⁾ EU—브라질의 특정 가금류 육류 조제 수입에 관한 조치 패널 미설립 2021년 11월 8일 협의시작	DS524: ¹⁶²⁾ 코스타리카—멕시코 신선 아보카도 수입에 관한 조치 2022년 5월 31일 DSB 패널 보고서 채택
	DS610: ¹⁶³⁾ 중국—리투아니아를 오가는 상품의 수출입과 서비스 공급에 대한 중국의 제한 2023년 4월 18일 WTO 패널 구성	DS537: ¹⁶⁴⁾ 캐나다—와인 판매 관련 조치 2021년 5월 12일, 캐나다 호주 상호 합의 2021년 5월 25일 보고서 회람
	DS611: ¹⁶⁵⁾ 중국—EU 지적재산권 2023년 3월 28일 WTO 패널 구성	DS589: ¹⁶⁶⁾ 중국—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에 관한 조치 2021년 11월 10일 WTO 패널 구성 2023년 8월 31일 패널 권한 만료
		DS598: ¹⁶⁷⁾ 중국—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2023년 8월 11일 상호 합의 2023년 8월 24일 보고서 회람

출처: WTO Plurilaterals, https://wtoplurilaterals.info/plural_initiative/the-mpia/ 검색일자: 2024. 1. 19. 각 분쟁 관련 내용 조사 후 저자 재작성

- 156)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602_e.htm 검색일자: 2024. 1. 17
- 157)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601_e.htm 검색일자: 2024. 1. 17
- 158)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83_e.htm 검색일자: 2024. 1. 17
- 159)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603_e.htm 검색일자: 2024. 1. 17
- 160)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22_e.htm 검색일자: 2024. 1. 17
- 161)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607_e.htm 검색일자: 2024. 1. 17
- 162)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24_e.htm 검색일자: 2024. 1. 17

다. 기타 규정 개정

- 일부 WTO 회원국은 패소한 당사국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했으며 이는 주로 분쟁에 대한 보복성 성격을 띠고 있음

1) EU

- EU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본질적인 원칙과 특징,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분쟁 및 미래의 분쟁에 대한 EU의 절차적 권리를 보존하기 DSU 제25조에 따른 상소중재를 위해 주도적으로 다자간 합의를 이끌어 왔음
- EU는 이를 바탕으로 MPIA 비참여국에 대해 패널 판정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할 경우, 무역 분쟁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존의 「국제 무역 규칙의 적용 및 집행에 대한 연합의 권리 행사에 관한 규정」(Regulation(EU)654/2014 (Regulation(EU)654/2014 concerning the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for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이하 Regulation(EU)654/2014)을 개정했음¹⁶³⁾
- Regulation(EU)654/2014의 개정은 Regulation(EU)2021/167를 통해 일부 규정을 수정 및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163)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610_e.htm 검색일자: 2024. 1. 17

164)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37_e.htm 검색일자: 2024. 1. 17

165)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611_e.htm 검색일자: 2024. 1. 17

166)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89_e.htm 검색일자: 2024. 1. 17

167)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98_e.htm 검색일자: 2024. 1. 17

168) Regulation(EU) 2021/167 서문

- Regulation(EU)2021/167에서는 분쟁 해결이 중단되면 EU는 국제무역협정을 집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Regulation(EU)654/2014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음¹⁶⁹⁾
 - Regulation(EU)654/2014에 따라 EU는 분쟁 해결 절차가 종결된 후 국제무역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기타 의무를 유예할 수 있음
 - 그러나 Regulation(EU)654/2014는 제3국이 유지한 조치에 대해 EU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지만 해당 조치를 채택한 제3국의 비협조로 인해 판결을 통한 분쟁 해결이 차단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다루지 않고 있음
 - EU는 제3국이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에 협조하지 않으며 분쟁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을 시 지역 또는 양자 협정을 포함한 국제무역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기타 의무를 신속하게 중단할 수 있어야 함
 - 제3국과의 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국제법상 EU의 의무에 따라 해당 제3국의 조치로 인한 EU의 상업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손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연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다음의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통상정책수단을 결정 및 이행해야 함
 - EU의 청구 전체 혹은 일부를 지지하는 WTO 패널보고서가 회람된 후, DSU 제17조에 따른 상소를 완료할 수 없으며 WTO DSU 제25조에 따른 임시상소중재에 대해 제3국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¹⁷⁰⁾
 - 지역 또는 양자 협정을 포함한 다른 국제무역협정과 관련된 무역 분쟁에서 제3국이 분쟁 해결 절차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판결이 불가능한 경우(비협조로 인하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포함)¹⁷¹⁾

169) EU 법령정보,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1R0167> 검색일자: 2024. 2. 26

170) Regulation(EU) 2021/167 제1조 제3항(a)

171) Regulation(EU) 2021/167 제1조 제3항(b)

-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 제3국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러한 조치의 수준은 그 제3국의 조치로 인한 연합의 상업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손상을 초과할 수 없음¹⁷²⁾

2) 브라질

- 2022년 5월 인도-설탕 및 사탕수수(브라질)(DS 579)¹⁷³⁾ 및 인도네시아-닭고기(DS 484)¹⁷⁴⁾ 사건이 발생한 후 브라질은 EU의 시행 규정과 유사하게 WTO에서 절차가 지연될 경우 무역분쟁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을 허용하는 법률 14.353호(LEI N° 14.353, DE 26 DE MAIO DE 2022)를 제정함¹⁷⁵⁾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다자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양허 또는 기타 의무를 중단하는 절차를 제공하도록 2010년 6월 24일 법률 No. 12,270(Lei n° 12.270, de 24 de junho de 2010)을 개정하였음¹⁷⁶⁾
- 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Câmara de Comércio Exterior)는 해당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WTO 회원국이 다자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양허 또는 기타 의무를 정지할 책임을 가짐¹⁷⁷⁾

172) Regulation(EU) 2021/167 제1조 제4항(a)

173) 2019년 2월 27일, 브라질은 사탕수수와 설탕의 농업 생산자를 위해 인도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지원조치와 인도가 설탕과 사탕수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모든 수출 보조금 조치에 관해 인도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2021년 12월 24일, 인도는 2021년 12월 14일 회람된 패널 보고서의 특정 법률 문제 및 법적 해석에 대해 상소하기로 한 결정을 DSB에 통보함

174) 2014년 10월 16일, 브라질은 Gallus Domesticus종의 가금류에서 생산된 고기 및 Gallus Domesticus종의 가금류 제품 수입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부과한 특정 조치에 관해 인도네시아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2020년 12월 17일, 인도네시아는 패널 보고서의 특정 법률 문제 및 법적 해석에 대해 상소하기로 한 결정을 DSB에 통보했고 2020년 12월 22일 브라질은 DSB에 교차 상소 결정을 통보함

175) 브라질 정부, https://www.planalto.gov.br/ccivil_03/_ato2019-2022/2022/lei/L14353.htm 검색일자: 2024. 1. 29

176) Lexology,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23bc842-f240-4336-b6fd-f17604268624> 검색일자: 2024. 1. 30

177) LEI N° 14.353, DE 26 DE MAIO DE 2022 제2조 (a)-(c)

- 브라질이 WTO 분쟁해결기구로부터 WTO 협정에 규정된 해당 회원국에 대한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적용을 중단하도록 승인받은 경우
- 브라질이 제기한 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지하는 WTO 패널 보고서가 회람된 경우
 - DSU 제17조에 따라 피신청인인 WTO 회원국의 상소가 있을 시
 - WTO DSU 제17조에 따른 상소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상소기구가 상소를 심리할 수 없거나 WTO 분쟁해결기구가 패널 보고서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
 - 브라질이 피고인 WTO 회원국에게 양허 또는 기타 의무를 정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
- 해당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정지는 앞서 언급한 WTO 회원국이 국가의 상업적 이익에 초래한 취소 또는 피해보다 크지 않아야 함

3) 영국

- 영국은 브렉시트를 앞두고 「조세(국경 간 무역)법 Taxation(Cross-border Trade) Act 2018」 제15조를 개정하여 분쟁 상대국이 영국을 상대로 무효에 대해 상소할 경우 보복을 허용하기 위해 논의하였음¹⁷⁸⁾
- 영국 하원의 유럽조사위원회(UK House of Common's European Scrutiny Committee)는 무역 상대국이 분쟁 해결 절차를 방해할 경우 EU가 일방적인 조치(무역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EU의 무역집행규정 변경 사항을 반영한 규정 개정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음¹⁷⁹⁾
- 국내법 개정에 대해 국제무역규칙 시행문서 - (Council documents 15088/19, 15090/19) (40998, 40999)에서 영국 정부는 국제무역시장의 발전상을 고려하고 목적에 적합하도록 무역집행체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¹⁸⁰⁾
- 영국 의회는 EU 무역집행규정 및 브렉시트의 영향과 관련한 2019~2021년 제39

178) 영국 의회,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5801/cmselect/cmeuleg/229-xxxiv/22904.htm> 검색일자: 2024. 1. 30

179) 상동

180)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 (Council documents 15088/19 and 15090/19) (40998 and 40999) ANNEX Question 8」, 2020. 4. 22

차 보고서에서 「조세(국경 간 무역)법」 제15조에 따라 영국이 유사한(동일하지는 않지만)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음¹⁸¹⁾

- EU 무역집행규정의 강화는 현재 EU와 자체 양자 간 무역협정을 맺고 WTO에 자체 권리를 행사하는 제3국인 영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음

□ 「조세(국경 간 무역)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국가나 영토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 규정을 제정하여 수입관세를 조정할 수 있음¹⁸²⁾

- 특정 국가 또는 영토의 정부 사이에 분쟁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원산지, 품목분류 등에 따라 수입관세를 조정하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authorised under international law)

□ 2020년 7월 22일 개정된 「조세(국경 간 무역)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국가나 영토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 규정을 제정하여 수입관세를 조정할 수 있음¹⁸³⁾

- 특정 국가 또는 정부 사이에 분쟁 또는 기타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조세(국경 간 무역)법」 제28조에 명시된 사항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considers that (having regard to the matters set out in section 28 and any other relevant matters) 원산지, 품목분류 등에 따라 수입관세를 조정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조세(국경 간 무역)법」 제28조에서는 제정된 조항에 따라 기능 행사 시 재무부, 국무장관, HMRC, TRA 및 기타 공공기관은 영국 정부가 당사국인 국제협정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나 영토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 규정을 제정하여 수입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81) 영국 의회,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5801/cmselect/cmeuleg/229-xxxiv/22904.htm> 검색일자: 2024. 1. 30

182) 영국 법령정보센터,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8/22/section/15> 검색일자: 2024. 1. 30

183) 영국 법령정보센터,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8/22/section/15/enacted> 검색일자: 2024. 1. 30

- 해당 규정에서 국제법에 따른 권한 부여 조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영국 정부의 일방적인 보복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음

IV. MPIA 관련 사례

1. 튀르키예 의약품 분쟁 사례

가. 개요

- ‘튀르키예 의약품 사건’에 대한 중재는 WTO 패널 판정에 대해 분쟁 당사국 간 합의로 DSU 제25조상 중재를 상소심으로 활용한 첫 번째 사례임¹⁸⁴⁾
 - WTO 설립 후 DSU 제25조 중재를 이용한 사건은 1건으로 그침
 - 이 사건은 현 상소기구가 정지된 상황에서 기존의 분쟁해결의 상소가 아닌 일반 분쟁해결절차로서 중재를 처음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장기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EU는 2019년 4월 2일 튀르키예의 의약품의 생산, 수입 및 유통의 조치에 대해 WTO 규범을 위배하는 차별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음¹⁸⁵⁾
 - 규범 위배가 된 튀르키예의 조치들은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외국기업에 튀르키예 내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함
 - 건강보험급여를 지원하는 대상 품목 검토 과정에서 국내산 의약품에 외국산에 비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치들이 있음

184) 최원엽, 「WTO 분쟁해결체제의 중재 절차 활용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2023. 1. 30, p. 76

185)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83_e.htm 검색일자: 2024. 1. 12

- WTO 분쟁해결기구에 EU는 튀르키예의 조치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차별하여 내국민 대우(NT)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건강보험지급 체계가 WTO에서 금지하는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함¹⁸⁶⁾
 - 현지화 요건과 우선권 부여 조치는 1994년 GATT 제3조 4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현지화 요구사항, 기술 이전 요구사항 및 우선권 부여 조치는 1994년 GATT 제10조 1항 및 제10조 3(a)조와 일치하지 않음
 - 이의가 제기된 조치는 1994년 GATT 제10조 2항과 일치하지 않음
 - 현지화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는 1994년 GATT 제11조 1항과 일치하지 않음
 - 현지화 요구사항은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제2조 1항 및 SCM(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3조 1(b)항과 일치하지 않음
 - 기술 이전 요건은 TRIPS 협정의 제3조 1항, 27조 1항, 28조 2항, 39조 1항 및 39조 2항과 일치하지 않음
 - EU는 협의 요청과 함께 SCM 협정 제4조 2항에 따라 증거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함
- 튀르키예는 이러한 조치들이 내국민대우 위반이 아니며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¹⁸⁷⁾
 - GATT 제3조 8항, 제20조 (b) 및 (d)항에 의해 아니라고 주장
- 2019년 8월 2일, EU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2019년 8월 15일 회의에서 DSB는 패널 설치를 연기함¹⁸⁸⁾
- 2019년 9월 30일 회의에서 DSB 패널이 구성됨
 -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연방, 스위스, 우크라이나 및 미국은 제3자 권리를 보유하게 됨

186)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83_e.htm 검색일자: 2024. 1. 12
 187) 상동
 188) 상동

- 2020년 9월 15일,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지연으로 패널이 2021년 하반기 이후에 최종 보고서가 발행할 것이라고 예상함
 - 보고서는 세 가지 공식 언어로 당사국에 배포될 것이며 배포 날짜는 번역 완료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DSB에 명시함

- 최종 보고서는 2021년 11월 11일에 당사국들에게 보내짐¹⁸⁹⁾
 - 당사국들에게 보내진 최종보고서에는 국내제조시설 조건을 맞추기 위해 외국제약 업체의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도록 하는 튀르키예의 조치는 맞지 않다고 판정됨
 - 패널은 튀르키예의 조치들이 GATT 제3조 4항에 의해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했으며 GATT 제20조 (b),(d)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함

- 2021년 12월 22일, 패널 의장은 패널이 2021년 12월 20일 EU의 요청을 승인했으며, 튀르키예는 당일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힘¹⁹⁰⁾
 - 패널은 DSU 제12조12항에 따라 2022년 1월 21일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함

- 2022년 3월 22일, 당사자들은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에 합의했음을 패널과 DSB에 공동으로 전달함¹⁹¹⁾
 - 합의된 절차를 통해 EU와 튀르키예는 당사자들의 특정 공동 요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DSU 제12조 12항에 따라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도록 패널에 공동으로 요청했고 패널은 요청을 수락함

- 2022년 3월 22일 튀르키예와 EU는 패널 판정과 관련하여 DSU 제25조에 따른 상소심 중재 합의절차를 DSB에 제출함¹⁹²⁾

189)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83_e.htm 검색일자: 2024.

1. 12

190) 상동

191) 상동

192) 상동

- 2022년 4월 25일 튀르키예는 DSB에 DSU 제25조상 중재 개시 결정을 통보하고 자국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함¹⁹³⁾
- 2022년 4월 28일 중재인이 3명 선임되었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7월 25일 중재 판정이 나옴
 - 2022년 7월 25일 DSU 제25조 3항에 따라 판정은 분쟁해결기구, 상품무역위원회,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 무역관련 투자조치위원회에 통보됨
 - 중재 판정은 합의 절차에 따라 중재 개시 이후 90일 이내에 내려짐
- 중재 판정은 DSB의 채택이 필요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1개월여가 지난 8월 22일 튀르키예는 중재 판정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DSB에 통보했음¹⁹⁴⁾
 - 튀르키예는 WTO 의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 분쟁에서 중재인과 패널의 권고와 판결을 이행할 계획이며 그렇게 하려면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DSB에 알림
- 2022년 11월 14일, DSU 제21조 3(c)항에 규정된 중재 절차에 의해 마감일에 관해 상호 동의했다고 알림
 - EU와 튀르키예는 DSB에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고려하고 상호 합의된 기간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 2023년 1월 10일, EU와 튀르키예는 DSB에 DSU 제21조 3(b)항 및 25조 4항에 따라 튀르키예가 중재인 판정 권고사항을 이행할 기간으로 2023년 4월 25일에 만료된다고 함¹⁹⁵⁾
- 2023년 5월 5일, 튀르키예와 EU는 DSU 제21조 및 22조에 따라 합의된 절차를 DSB에 통보함

193)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83_e.htm, 검색일자: 2024. 1. 12

194) 상동

195) 상동

- 또한, 당사자들은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전송하고, 당사자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제 25조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함¹⁹⁶⁾
 - 패널은 당사자들의 요청을 승인하여 제3자에게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당사자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중재에 의지한다면 보고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 동의함

- 2023년 4월 25일, 튀르키예는 DSU 제21조 6항에 따라 DSB에 중재 판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알림¹⁹⁷⁾
 - 2022년 8월 25일 발효된 이전 적용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의약품 상환 규정을 발표함
 - 재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제약회사에 대한 신청 프로세스를 시작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함
 - 새로운 대체의약품 상환 규정의 초안을 준비함
 - 인체 의약품 우선순위 평가위원회의 업무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을 준비함

- 2023년 5월 19일, 튀르키예는 DSB에 새로운 대체의약품 상환 규정이 2023년 5월 12일에 발표되었음을 추가로 통보함¹⁹⁸⁾

196)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83_e.htm, 검색일자: 2024. 1. 12

197) 상동

198) 상동

나. 의의

- 튀르키예 의약품 사건은 상소 중재를 통해 DSU 제25조 규정으로 임의중재¹⁹⁹⁾가 WTO의 상소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²⁰⁰⁾
- 상소중재는 중재라는 틀에 맞춰져 있으나 실질적인 관점에서 WTO 체제 내에서의 합의된 절차로 규정이 됨²⁰¹⁾
 - 이 사건의 경우 상소심의 규정의 DSU 제17조와 MPIA 절차 규정이 중재 합의에 반영되어 있음
 - 튀르키예는 MPIA 가입국이 아닌 것이 특징이지만 EU가 MPIA를 주도한 일방 당사국임
 - WTO 체제 내에서 상소중재를 이용하여 상소기구 작업절차에 맞춰 진행이 됨
- 중재는 DSU 제25조를 기반으로 하여 당사국과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²⁰²⁾
 - 중재를 통하여 분쟁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당사국에 따라 기한을 비롯하여 상황에 맞춰 절차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음
- 이번 튀르키예 사건을 보면 WTO 분쟁해결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당사국들 사이에 협의하여 중재를 체결한다면 사안별로 중재를 통한 상소심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의를 줌²⁰³⁾

199) ad hoc arbitration

200) 최원엽, 「WTO 분쟁해결제도의 중재 절차 활용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2023. 1. 30, p. 82

201) 위의 논문

202) 위의 논문

203) 위의 논문

2. 콜롬비아-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산 냉동 감자튀김 분쟁 사례

가. 개요

1) 개요

- 2019년 11월 15일, EU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이 원산지인 감자(냉동 감자튀김)수입에 대해 콜롬비아가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에 관한 협의를 콜롬비아에 요청함
 - ‘프렌치 프라이’라고 불리는 감자튀김의 원조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는 벨기에가 제소를 주도했으며 감자는 중남미 안데스 산악지역이 원산지이고, 벨기에는 세계 최대 감자 가공품 수출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번 분쟁을 EU와 콜롬비아 간 자존심 대결로 해석하기도 함²⁰⁴⁾
- 콜롬비아는 2018년 11월부터 2년 동안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산 냉동 감자튀김에 3%에서 8%의 관세를 부과함
 - 관세가 부과된 냉동 감자튀김은 EU가 콜롬비아에 수출하는 냉동 감자튀김의 85% 임²⁰⁵⁾
 - EU는 이러한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협정, 관세평가협정 제10조,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6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음
- 2020년 7월 13일, EU와 콜롬비아는 DSB에 이 분쟁에서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합의된 중재 절차)에 동의했음을 통보함²⁰⁶⁾
 - 2020년 6월 29일 회의에서 DSB는 패널을 구성했으며 브라질, 중국, 온두라스, 인도, 일본, 러시아 연방, 튀르키예 및 미국이 제3자로 참여하였음

20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2003900098>, 검색일자: 2024. 2. 2

205) Allen & Overy, <https://www.allenoverly.com/en-gb/global/news-and-insights/publications/dispute-resolution-at-the-wto-the-wheels-continue-to-turn> 검색일자: 2024. 2. 1

206) WT/DS591/8

- 2021년 4월 20일 EU 및 콜롬비아는 합의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제25조 제2항에 동의하며 최종 패널 보고서에 따른 상소를 위해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를 시작을 통보하였음²⁰⁷⁾
- 2022년 8월 29일, 패널은 당사국들과 협의한 후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 작업 절차(Additional Working Procedures)를 채택하였음²⁰⁸⁾
 - 패널은 합의된 중재 절차에 따른 중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DSU 제12조 제12항에 따라 패널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콜롬비아의 통신문을 접수하며 해당 절차에 따라 콜롬비아의 요청을 양 당사국의 공동 요청으로 간주하였음
- 2022년 9월 16일, 패널은 DSU 제12조 제12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작업을 재개하도록 요청받지 않는 한 최종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하지 않기로 결정함²⁰⁹⁾
- 2022년 10월 6일, 콜롬비아는 합의된 중재 절차에 따라 제25조에 대한 상환청구 통지를 제출했음²¹⁰⁾
 - 당사국들의 상소 통지서(Notice of appeal)라고 부르는 이 통지서는 2022년 10월 10일에 DSB에 회람되었음
 - 해당 통지서에는 당사국, 제3자 및 중재인 명부에 있는 중재인들에 송부하는 최종 패널 보고서의 전문이 포함되어 있음
- 최종 판정은 2022년 12월 19일 당사국들에 전달되었으며 2022년 12월 21일, DSU 제25조 3항에 따라 WTO의 3개 실무 언어로 된 판정이 DSB, 상품무역위원회, 반덤핑관행위원회에 통보되어 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음²¹¹⁾

207) WT/DS591/ARB25 부속서 1, 제1조

208)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91_e.htm 검색일자: 2024. 2. 7

209) 상동

210) 상동

211) 상동

- MPIA 중재인들은 콜롬비아-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의 냉동 감자튀김에 대해 콜롬비아가 EU의 냉동 감자튀김에 부과한 관세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결함²¹²⁾
 - MPIA 중재인들은 패널의 조사 결과, 4가지 중 3가지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
- 2023년 1월 20일, 콜롬비아는 DSB에 WTO 의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중재인 판정을 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음²¹³⁾
- 2023년 3월 10일, 콜롬비아와 EU는 2023년 11월 5일까지를 판정 이행기간으로 합의했음을 DSU에 통보함²¹⁴⁾
 - 콜롬비아는 DSB에 일부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중재자의 판정에 따를 계획이며 2023년 11월 5일까지 그들의 권고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통보했음
 - 2023년 10월 10일, 콜롬비아와 EU는 DSU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합의된 절차를 DSB에 통보함
- DSU 제21조 제6항²¹⁵⁾에 따른 콜롬비아의 현황 보고서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해 (2023년 12월 7일) 콜롬비아는 DSU 제25조에 따라 중재인의 판결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음²¹⁶⁾

2) 판결 내용 요약

- 기존의 상소기구 패널은 MINCIT의 조사 개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반덤핑 협정

212) 상동

213) 상동

214) 상동

215) 분쟁해결기구는 채택된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모든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언제라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수 있음. 분쟁해결기구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권고나 판정의 이행문제는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합리적 이행기간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후에 분쟁해결기구 회의의 의제로 상정되며, 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분쟁해결기구의 의제로 남음. 이러한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개최되기 최소한 10일 전까지 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 상황에 관한 서면보고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함

216) 상동

제5.3조에²¹⁷⁾ 따른 EU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그러나 MPIA 중재인들은 패널의 판결을 뒤집고 콜롬비아가 반덤핑협정 제5.3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함²¹⁸⁾
 - 중재인은 콜롬비아 조사기관(MINCIT)이 조사 개시를 위해 정상 가치를 결정할 때 국내 판매 가격 대신 제3국 판매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서(specific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underlying investigation)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반덤핑협정 제5.3조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함²¹⁹⁾
- 패널은 콜롬비아가 반덤핑협정 제6.5조²²⁰⁾ 및 제6.5.1조²²¹⁾의 기밀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음²²²⁾
 - 콜롬비아는 개정된 신청서를 통해 특정 정보에 대한 기밀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반덤핑협정 제6.5조를 위반하였으며 기밀로 간주되는 특정 정보의 비기밀 요약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아 반덤핑협정 제6.5.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 중재인들은 기밀 취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MINCIT가 반덤핑협정 제6.5조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패널의 판결을 지지하였음²²³⁾

217) 당국은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함

218)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91_e.htm 검색일자: 2024. 2. 7

219) WT/DS591/7 p. 91

220) 성격상 비밀인 정보(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됨.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공개될 수 없음

221)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 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하며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해야 함.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함

222) WT/DS591/ARB25 pp. 22~23

223)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91_e.htm 검색일자: 2024.

- MPIA의 중재인들은 MINCIT의 기밀 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문제의 정보가 기업에 의해 기밀로 제공(confidential basis)되었고 기밀로 취급(treated by MINCIT as confidential)되었다고 판단함
- 패널은 콜롬비아가 반덤핑협정 제2.4조²²⁴⁾에 위배되는 행동을 취했는데, 이는 MINCIT가 특정 수출업자들의 덤핑 계산 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음
- EU는 MINCIT가 포장비용을 포함한 적절한 허용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불공정하게 비교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수출업체의 조정 요청과 관련하여 중재인은 반덤핑협정 제2.4조에 따른 EU의 포장비용 관련 청구 중 일부가 패널 요청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콜롬비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음²²⁵⁾
- 중재인은 기업의 유류비 조정 및 포장비 조정에 대한 요청을 MINCIT가 거부했으므로 문제의 주장이 콜롬비아가 공정한 비교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 사실적 세부 사항과 관련되어 있어 패널 요청에 명시될 필요가 없었으며 패널의 참조사항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음²²⁶⁾

2. 7

- 224)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에 공정한 비교를 해야 하며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지며 제반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들을 포함하여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함.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가격이 수출자 및 수입자 또는 제3자 간의 제휴나 보상약정으로 인하여 믿을 수 없다고 관계당국에 보여지는 경우에는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 비용 및 발생한 이윤이 또한 고려되어야 함. 이러한 경우 가격비교가 영향을 받을 때에는 당국은 구성수출가격의 거래단계와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정상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항에 따라 정당화된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함. 당국은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당해 당사자에게 알리며, 이러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책임을 지을 수 없음

225) WT/DS591/7 Article 8.1

226) WT/DS591/ARB25 pp. 29~30

- MINCIT의 피해 및 인과관계 결정에 대해 패널은 콜롬비아가 반덤핑협정 제3.1조²²⁷⁾, 제3.2조²²⁸⁾, 제3.4조²²⁹⁾ 및 제3.5조²³⁰⁾와 일관되지 않게 행동했다고 판단함
- 콜롬비아는 제3조의 덤핑 수입품이라는 용어는 당국이 최소 마진(2% 미만)을 포함하여 덤핑 마진을 계산하는 모든 수입품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음
- 중재인들은 당국이 최소 덤핑 마진을 결정한 경우 조사를 즉시 종료해야 하는 반덤핑협정 제5.8조²³¹⁾에 따른 요구 사항을 무효로 만들 수 있으며, 콜롬비아의 해석이 제17.6(ii)조²³²⁾의 의미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227)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a) 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함

228)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함.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였을 가격 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함

229)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함.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음

230) 덤핑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함.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됨. 이 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됨

231) 관계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히 종결됨. 덤핑마진이 최소허용수준이거나,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됨

232) 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관련규정을 해석하며 패널이 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정하고 당국의 조치가 허용되는 해석 중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 패널은 당국의 조치가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의의

1) 기간 제한

- 소송에 비해 중재가 갖는 장점은 적시성과 효율성으로 DSU 제17조 제5항에 따른 상소기구 절차와 마찬가지로 MPIA 중재자는 합의된 절차 제17.5조에 따라 상소 통지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함²³³⁾
 - 미국은 DSU 제17조 제5항에 따른 최대 90일의 상소 심리기한을 통상 분쟁의 복잡성과 상소기구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2011년 이래 상소기구가 지켜오지 않았다며 비판해왔음²³⁴⁾
- 해당 사례는 상소기구에 비해 중재가 갖는 절차적 유연성을 보여주며 90일 기한 내에 판결이 이루어졌음²³⁵⁾
 - MPIA 중재 절차에 따른 판정은 상소 통지부터 판결까지 총 74일이 소요되었음
 - MPIA에서는 중재자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콜롬비아 사건의 중재인은 청문회에서 서면 제출에 대해 단어 및 구두 진술에 대한 시간을 제한하였음
 - 상소기구가 90일 기한 내에 보고서를 회람한 것은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으며 상소기구에 제출된 20건의 상소에 대해 소요된 시간은 평균 360일이었음²³⁶⁾

233) WT/DS591/ARB25/Add.1 p. 8

234) U.S. MISS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 Geneva, 2018. 6. 22., pp. 9~21.

235) Kluwer Law International, <https://arbitrationblog.kluwerarbitration.com/2023/08/11/three-years-of-the-multi-party-interim-appeal-arbitration-arrangement-an-interim-evaluation-of-arbitration-as-a-means-to-appeal-wto-panel-reports/> 검색일자: 2024. 1. 31

236) Joost Pauwelyn, “The WTO’s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MPIA): What’s New?,” *World Trade Review* 22(5), 2023, p. 697

〈표 IV-1〉 MPIA 상소 절차 기간

절차	소요일	날짜
콜롬비아 상소통지	0	2022.10.6
유럽의회 반박제출	18	2022.10.24
제3국 의견제출	21	2022.10.27
청문회	40 및/또는 41	2022.11.15 및/ 또는 2022.11.16
판결	60~90	2022.12.5. 내지 2023.1.4

자료: WT/DS591/ARB25/Add.1 p. 11

2) WTO체제(상소단계 유지 및 사무국 지원)

- MPIA는 MPIA 회원국 간의 이 분쟁에서 WTO 분쟁 해결 시스템의 구속력과 두 단계의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음
 - EU는 1단계 패널의 설립과 구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해당 패널은 콜롬비아의 반덤핑 관세가 WTO 반덤핑협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으며 패널 보고서에 대해 상소할 수 있는 콜롬비아의 권리가 행사되었음

- 합의된 임시상소 중재 절차 제7항에 따라 26명의 MPIA 중재인은 WTO 사무국의 지원을 받았으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 직원은 일반적으로 1심 패널을 지원하는 법무부서나 규정 부서에 배치되지 않음²³⁷⁾
 - 다른 사무국 부서에서 MPIA로 파견되며 자신들의 업무 내용에 관해 중재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만 응답할 수 있음
 - MPIA 중재인과 마찬가지로 직원도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반 WTO 예산에서 급여를 받게 됨
 - MPIA는 WTO를 벗어난 범주에서 운영되는 다자간 협의가 아니며 DSU 제25조의 연결고리로 다자간 분쟁해결체제에 정면으로 수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37) Joost Pauwelyn, “The WTO’s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 What’s New?,” *World Trade Review* 22(5), 2023, P. 698

- 다만 미국의 경우 MPIA 운영지원을 위한 부서 신설, 인력 할당, WTO 본예산을 사용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음²³⁸⁾
 - 미국의 경우 상소기구에 할당되는 예산의 축소를 위해 2020년 예산 승인에 대해 거부한 선례가 있음
 - 이에 대해 MPIA를 지지하는 측은 DSU 제25조 중재에 대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상소기능이 정지되어 예산 사용이 저조하며 DSU 제25조 중재 자체가 WTO 분쟁해결 항목예산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3) 분량 및 시간제한

- 해당 사례에서는 합의된 중재 절차 제12항에 따라 절차의 효율성 및 90일 기간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중재인의 서면 문서에 대한 단어 제한과 청문 및 구두 진술에 대한 시간제한을 설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²³⁹⁾
 - 상소 신청 및 기타 상소 신청 통지는 통상 최대 2,000단어 이내로 제한하였음
 - 상소인의 보고는 일반적으로 최대 27,000 단어 또는 상소된 패널 보고서 단어의 40%로 서면 보고서 분량을 제한하며 제3자의 경우 최대 9,000단어 이내로 작성해야 함²⁴⁰⁾
 - MPIA 상소 절차가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경우 위의 표시 한도는 15% 증가됨
- 2015년 연례 보고서(WT/AB/26)²⁴¹⁾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상소 및 기타 상소국의 서면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에 작성된 초기 5건의 보고서당 평균 단어 수는 26,965단어였고 이 기간의 마지막 5건의 보고서당 평균 단어

238) 이천기·강민지,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17, 2020. 6, pp. 20~21

239) Joost Pauwelyn, “The WTO’s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 What’s New?,” *World Trade Review* 22(5), 2023, p. 698

240) WT/DS591/ARB25/Add.1 p. 8

241) WT/AB/26 p. 119

수는 34,982단어였음²⁴²⁾

- 해당 기간의 수치를 고려하였을 때 상소국 및 기타 상소국의 서면보고서가 거의 30%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여 90일 기간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참가국들의 명시적인 바람을 감안하여, 평균 26,965단어를 27,000단어로 반올림하여 해당 단어 수를 결정하였다고 설명함
 - 서면보고 제출 시 각 당사국 또는 제3자는 총단어 수의 최대 10% 길이로 해당 제출에 대한 요약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요약은 판정에 부록으로 첨부되고 중재인에 의해 내용이 수정되거나 편집될 수 없음²⁴³⁾
- 첫 중재 보고서는 39페이지 분량으로 중재인들의 실제 분석은 28페이지의 분량이었으며 이는 상소기구의 보고서와 비교하면 짧은 분량으로 상소기구 보고서의 평균 분량은 112페이지였음²⁴⁴⁾
- 미국은 상소기구의 문제점 중 하나로 장황한 보고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옴
 - 상소기구 보고서의 평균 참조 보고서는 22개인 데 비해 해당 중재 보고서는 10개의 이전 상소 보고서를 참조하여 선행 보고서의 참조가 줄어든 모습을 보임
 - 중재 보고서에는 3페이지마다 2개의 상소기구 참조가 포함되었으며 상소기구의 최근 5년간 인용된 선행보고서의 수는 평균 3쪽당 6건 내외(1쪽당 2건)였음

4) 청문회

- 합의된 중재 절차 제12항에 따라 절차적 효율성 및 기한 준수를 위해 가상 사전 청문회를 소집하여 합의된 중재 절차 제10항에서 규정하는 분쟁해결에 필요한 문제 또는 청문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소 당사국이 제기한 주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음²⁴⁵⁾

242) WT/DS591/ARB25/Add.1 p. 16

243) WT/DS591/ARB25/Add.1 p. 9

244) Joost Pauwelyn, "The WTO's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 What's New?," *World Trade Review* 22(5), 2023, p. 700

245) WT/DS591/ARB25/Add.1 p. 9

- 해당 사례에서 중재인들은 청문회 6일 전인 2022년 11월 9일 사전청문회를 소집하여 당사국에게 청문회에서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구두 청문회에서 전체 진술은 각 30분에서 35분 이내로 하고, 제3자별 개시 진술은 각 7분 이내로, 당사국별 종결 진술은 각 5분 이내로 제한함

5) DSU 제11조

- 당사국들이 패널의 사실적(법률적이지 않은) 결과에 대해 상소하는 소위 DSU 제11조²⁴⁶⁾ 주장이 상소기구 절차를 상당히 복잡하게 하고 지연시킨다는 견해가 있었음
- WTO 분쟁해결절차는 DSU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선례구속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상소기구의 선례를 거부한 패널 보고서를 반복하는 등 여러 차례 선례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²⁴⁷⁾
- 중재절차에서는 90일의 기간 내에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재인이 DSU 제11조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청구를 배제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당사국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²⁴⁸⁾
- 중재인들은 당사국이 DSU 제11조 청구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청구가 합의된 중재 절차 제12항 및 제13항에 언급된 판정을 위한 90일의 기간에 미칠 영향을

246) 제11조 패널의 기능은 분쟁해결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패널은 분쟁의 사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 합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해결기구가 대상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조사결과를 작성함. 패널은 분쟁 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247) 조유미, 「상소기구 개혁 논의 동향 및 그 기능에 관한 재고찰」, 『국제경제법연구』 제21권 제3호, 2023. 11, pp. 62~63

248) WT/DS591/ARB25/Add.1 p. 8

평가해야 하며 당사국에 다음의 내용을 간단히 명시할 것을 요청함²⁴⁹⁾

- 중간 검토 단계에서 패널 오류 혐의가 패널에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및 오류제기 방법
- DSU 제11조의 주장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문제인지, 분쟁에서 쟁점인 실제 조약 조항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없는 문제인지에 대한 내용
- 패널의 오류가 (패널의 독점적인 영역 내에서) 단순히 사실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 해당 상소와 관련된 절차에서 콜롬비아는 DSU 제11조에 따른 어떠한 주장도 제기하지 않았음²⁵⁰⁾

6) 논의의 범위

□ 상소기구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결정에 obiter dicta²⁵¹⁾를 포함시켜 권한을 자주 과도하게 수행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비판에 대해 MPIA는 부속서 1의 제10항에서 당사국들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문제들만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²⁵²⁾

□ 콜롬비아가 반덤핑협정 제17.6(ii)조항에 대한 해석에서 패널의 오류를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중재인들이 해당 조항을 불필요하게 논의했다는 견해가 있음²⁵³⁾

- 중재인들은 패널의 접근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패널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패널이 반덤핑협정 제5조에 따라 오류를 범했는지 여부에 대한 접근방식을 배제하고 제17.6(ii)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하였음

249) Joost Pauwelyn, “The WTO’s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 What’s New?,” *World Trade Review* 22(5), 2023, pp. 698~699

250) 상동

251) 판사의 의견으로서 결정적이거나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252) Kluwer Law International, <https://arbitrationblog.kluwerarbitration.com/2023/08/11/three-years-of-the-multi-party-interim-appeal-arbitration-arrangement-an-interim-evaluation-of-arbitration-as-a-means-to-appeal-wto-panel-reports/> 검색일자: 2024. 1. 31

253) 상동

- 또한 콜롬비아 사건의 증재인은 DSU 및 GATT 조항을 해석하기 위해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증재 형태를 보면 국제협약의 모호성을 고려할 때 관련 판결 사례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임
- 미국은 패널이 그 해석에서 벗어날 설득력 있는 이유(cogent reasons)가 없는 한 패널이 이전의 상소기구 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상소기구의 견해에 반대해 오고 있음²⁵⁴⁾
 - 상소심은 종종 당사국의 사실문제에 관한 국내법·국내조치의 의미에 대해 심리를 해왔으며 설득력 있는 이유에 따라 상소기구의 선언을 단순히 적용했을 뿐 DSU와 WTO 협정의 법적 문구를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²⁵⁵⁾
 - 이는 ‘상소 통보문에 제기된 법률문제만 상소기구가 다룰 것’이라고 규정한 DSU 제17조 제12항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해왔음²⁵⁶⁾
- 특히 MPIA는 대상이 되는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해석에 있어서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은 회원국에 중대한 가치가 있다’고 긍정하고 있어²⁵⁷⁾ MPIA가 다시 MPIA 결정들을 법적 선례로 취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254) 상동

255) WTO,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8_e/dsb_18dec18_e.htm 검색일자: 2024. 2. 21

256) 이천기·서진교·김지현,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26, 2019. 12, p. 5

257) 위의 논문

V. 요약 및 소결

1. 요약

가. WTO 상소기구의 부재

- 상소기구는 GATT 규정에 의한 법적 구속력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WTO 분쟁해결 절차에 의한 준사법적 규정을 도입하여 운영되어 왔음
 - GATT 분쟁해결에 비하여 강제 이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회원국들이 상소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였음

- 하지만 2017년 이후로 미국의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 거부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마비되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게 되었음
 - 미국의 상소 위원 임명 거부 및 WTO의 예산 절감을 주장하며 다양한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음
 -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 만료 후 상소심에 대한 관여, 상소 심리 기한,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심리 기준의 적용 등에 대해 지적함
 - 미국은 WTO에 대한 불만을 꾸준히 제기하였으며 트럼프 정부 시기에 정지된 상소기구 기능이 바이든 정부 이후 원복을 기대하였으나 현재까지 상소기구 위원은 공석임

- WTO는 WTO 개혁을 주요 의제로 삼으며 회원국들과 협의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으나 쉽게 합의되지 않고 있음

- EU는 상소기구의 장기 공백을 우려하여 MPIA를 제안하였으며, 현재 MPIA 가입국들과 다양한 분쟁 속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함

나. MPIA의 함의

- 콜롬비아와 튀르키예 사례 모두 상소심에서 중재 절차를 통해 최종 판정을 받고 판결이행이 이루어져 절차상 구속력을 인정받았으며 중재 절차의 유연성으로 인해 중재인은 적시에 효율적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었음
 - 특히 튀르키예의 경우 MPIA 가입국이 아니었음에도 중재합의에 따라 자국 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판결을 이행하고 있음
- 그러나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는 상소기구 위기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상소기구에 대해 WTO 회원국이 제기한 우려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MPIA는 자발적인 성격으로 WTO 회원국, 특히 비참가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는 보편적 수용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²⁵⁸⁾
 - 상소기구가 마비된 상태에서 WTO 2단계 판정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 MPIA에 가입하지 않은 WTO 회원국들이 협정에 가입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고 있음
- MPIA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국가가 MPIA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콜롬비아-냉동 감자튀김 사건의 경우 MPIA를 반대한 미국이 제3자로 참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미국은 상소기구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 MPIA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MPIA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제3자로 의견을 제출하였음
 - 분쟁 당사국에 비해 제한적인 지위이지만 제3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양자협

258) African Sovereign Debt Justice Network(AfSDJN), <https://www.afronomiclaw.org/category/analysis/mpia-viable-temporary-alternative> 검색일자: 2024. 2. 19

의 요청을 통해 분쟁해결에 참여가 가능함²⁵⁹⁾

- 2023년 6월 30일, EU는 WTO DSB 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완전하게 운용되는 분쟁 해결제도를 복원하고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긴다고 선언하였음²⁶⁰⁾
 - 또한 현재의 상소기구 부재에 대해 MPIA는 참가자 간의 완전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유지하고 규칙 기반 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마련된 바, 모든 WTO 회원국의 가입이 가능하고, 교착 상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힘
- 일본의 MPIA 참여 결정은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비롯한 MPIA의 주요 참여국 간 분쟁 해결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함
 - 특히 일본과 중국이 모두 MPIA 참가국이었던 일본산 스테인리스강(DS601)에 대한 중국과의 반덤핑 관세 사건은 일본이 MPIA에 가입한 후 중국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협의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 참여로 인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²⁶¹⁾

259) 권영민, 「한국의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에 관한 분석:제3자 참여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 40권 제2호, 2015. 4, p. 3

260) Permanent Mi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world-trade-organization-wto/eu-statements-regular-dispute-settlement-body-meeting-30-june-2023_en?s=69 검색일자: 2024. 2. 19

261)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https://www.rieti.go.jp/en/special/policy-update/112.html#note8> 검색일자: 2024. 2. 19

2. 소결

가. MPIA 참여 여부 및 예외규정 관련

- 상소기구의 역할 소멸 후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를 상소함으로써(appeals into the void) 의도적으로 사건의 종결을 유예하고 패널 보고서의 채택을 막을 수 있었음
- 그러나 MPIA의 이행으로 해당 방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EU는 WTO 상소기구 부재 속에서 의도적 상소로 인해 국제 무역 질서가 훼손되는 상황이 MPIA로 인해 방지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²⁶²⁾ 현재 많은 분쟁 사건이 의도적 상소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음²⁶³⁾
 - MPIA 가입국인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철강 제품에 대한 분쟁에서 WTO 패널은 우리나라의 정보 기밀유지 위반, 일부 정보 거부 등으로 인하여 일본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²⁶⁴⁾ 우리나라가 상소하면서 판결 집행이 유예되었음
 - 2021년 1월 22일 우리나라는 DSB에 패널 보고서의 특정 법률 및 법률 해석 문제에 대한 상소 결정을 통보했으며, 2021년 1월 27일 일본은 DSB에 현재 상소기구의 비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상소기구의 작업 절차에 명시된 모든 절차 기한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했음
- MPIA의 판결이 이루어진 두 가지 사례의 경우 피소 국가가 판정을 이행함으로써 실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우리나라가 분쟁 당사국인 사건에 대해 MPIA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MPIA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262) EU Commissio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858 검색일자: 2024. 2. 19

263)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https://www.rieti.go.jp/en/special/policy-update/112.html#note8> 검색일자: 2024. 2. 19

264)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53_e.htm, 검색일자: 2024. 2. 19

-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 일방적인 패권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규칙 기반 접근방식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다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현재 분쟁 당사국인 사건 중 MPIA 미가입국인 미국에 4가지 건에 대해 제소하였고,²⁶⁵⁾ MPIA 가입국인 일본으로부터 3가지 건²⁶⁶⁾에 대해 피소되어 있어 특히 양국의 분쟁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같은 맥락에서 MPIA 가입국 간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에 동의를 기반으로 진행 중인 상소심들의 판결 추이 또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MPIA 가입국 간의 분쟁은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에 동의했는지라도 대부분 당사국들의 협의로 중재 절차 없이 상소심이 종결되었음
 - 이는 MPIA가 WTO 분쟁해결 절차가 상소기구의 기능 장애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WTO 체제와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미국의 근본적인 불만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영속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이 반대하는 한 MPIA에 국한해서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그 밖에 MPIA 비참여 회원국에 대한 각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MPIA 참여국들의 관련 규정의 개정 방향 및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EU는 승소한 패널 판정에 대해 상대국이 상소를 제기할 시 EU가 보복관세, 수량 제한조치 등 무역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수정안(Regulation(EU)2021/167)이

265) DS488(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DS539(한국의 특정 내식성 철강제품, 냉연강판 제품, 열연강판 평판 제품 및 대형 전력 변압기(LPT)의 AFA 관련 사례), DS545(한국산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경우 제소가 진행 중이며 DS546(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상호 합의상대임(일본에 제소했던 DS590(대(對)한국에 대한 제품 및 기술 수출에 관한 조치)의 경우 2023년 제소를 철회하였음)

266) DS553(일본산 스테인리스강봉) 상소 중, DS571(상업용 선박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DS594(상업용 선박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2차)의 경우 합의요청을 수락한 상대임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²⁶⁷⁾

- EU의 규정 개정²⁶⁷⁾에 따라 영국 및 브라질 또한 유사한 의도로 무역 보복조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제사회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무역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나. 제13차 WTO 각료회의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Ministerial Conference)에서는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접근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할 것을 합의하였음²⁶⁸⁾
 - WTO는 개혁으로 인해 분쟁해결 시스템의 기능 회복과 WTO의 효율적 업무 참여 촉진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노력할 것을 지시함
-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2024년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었음²⁶⁹⁾
 - MC13 회의의 중요 의제 중 하나는 분쟁해결제도의 회복에 합의를 둔 WTO 개혁이었음²⁷⁰⁾
- 미국의 주도로 WTO 개혁에 대한 비공식 협상을 위해 2023년 3월, 5월, 7월, 10월, 12월 회의를 진행하고 2024년 1월에는 공식적 논의를 진행함²⁷¹⁾
 - WTO 회원국들은 분쟁해결 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하였음

267) EU 집행위원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1R0167> 검색일자: 2024. 2. 22

268) WTO,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3_e/briefing_notes_e/reform_e.htm, 검색일자: 2024. 2. 12

269) WTO,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3_e/mc13_e.htm, 검색일자: 2024. 2. 12

270) WTO,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6.aspx?MetaCollection=WTO&SymbolList=%22G%2fL%2f1523%22+OR+%22G%2fL%2f1523%2f*%22&Language=ENGLISH&SearchPage=FE_S_S001&languageUIChanged=true, 검색일자: 2024. 2. 12

271) WTO,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3_e/briefing_notes_e/reform_e.htm, 검색일자: 2024. 2. 12

- WTO는 개혁과 관련한 작업이 수행되었지만 상소심사 관련 문제는 여전히 작업 중이며 지속적 논의 중이라 밝힘²⁷²⁾
- 하지만 MC12 회의에서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다르게 2024년까지 WTO 분쟁해결 제도가 정상화되기는 어려워 보임
 - 미국은 제도에 대한 신뢰성 구축을 위해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다른 WTO 회원국과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음²⁷³⁾
 - 상소기구 기능 회복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절충적 합의가 필요해 보임
- 각국의 입장 차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후 우리나라 입장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단기간에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므로 MC13뿐 아니라 관련 회의의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함
 - 관련 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가 필요함

272) WTO,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3_e/briefing_notes_e/reform_e.htm, 검색일자: 2024. 2. 12

273) WTO,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MIN24/W11.pdf&Open=True>, 검색일자: 2024. 2. 20

참고문헌

- 권영민, 「한국의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에 관한 분석:제3자 참여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0권 제2호, 2015. 4, p. 3
- 이효영, 『WTO 상소기구 제도의 성과와 한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2. 9
- 이효영, 『WTO 상소기구 제도의 현황과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3
- 이천기·강민지,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17, 2020. 6. 17
- 이천기·서진교·김지현,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26, 2019. 12. 12
- 예상준·엄준현, 「WTO 상소기구 기능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01, 2020. 12
- 장재량,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상소기구를 중심으로)」, 『통상법무정책』, 2022년 제1호(통권 제3호), 2022
- 조유미, 「상소기구 개혁 논의 동향 및 그 기능에 관한 재고찰」, 『국제경제법연구』, 제21권 제3호, 2023. 11. 30
- 최원엽, 「WTO 분쟁해결체제의 중재 절차 활용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2023-1, 법무부, 2023. 1
-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 (Council documents 15088/19 and 15090/19) (40998 and 40999) ANNEX Question 8」, 2020. 4. 22
- U.S. MISS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Geneva, June 22, 2018,」, 2018. 6. 22

Joost Pauwelyn, “The WTO’s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 What’s New?,” *World Trade Review* 22(5), 2023

JOB/DSB/1/Add.11, 25

JOB/DSB/1/Add.11/Suppl. 1

JOB/DSB/1/Add.12

Regulation (EU) 2021/167

LEI N° 14.353, DE 26 DE MAIO DE 2022

WT/DS591/8

WT/DS591/7

WT/DS591/ARB25/Add.1

WT/AB/26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mofa.go.kr/>

일본 외무성, <https://www.mofa.go.jp/>

영국 법령정보센터, <https://www.legislation.gov.uk/>

EC, <https://policy.trade.ec.europa.eu/>

EU 집행위원회, https://commission.europa.eu/index_en

KITA, <https://www.kita.net>

WTO Plurilaterals, https://wtoplurilaterals.info/plural_initiative/the-mpia/

WTO, <https://www.wto.org/>

영국 의회,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5801/cmselect/cmeuleg/229-xxxiv/22904.htm> 검색일자: 2024. 1. 30

Allen & Overy , <https://www.allenoverly.com/en-gb/global/news-and-insights>

/publications/dispute-resolution-at-the-wto-the-wheels-continue-to-turn

검색일자: 2024. 2. 1

african Sovereign Debt Justice Network (AfSDJN), <https://www.afronomicslaw.org/category/analysis/mpia-viable-temporary-alternative>

검색일자: 2024.

2. 19

BKL Legal Update,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DateFrom=&searchDateTo=&order)

Condition=&searchKeyword=&searchDateFrom=&searchDateTo=&order

By=orderByNew&pageIndex=1&whichOne=NEWSLETTER&menuType=law

&lawNo=&expertNo=&newsletterNo=5433&memberNo=&fieldNo=&lang

=ko 검색일자: 2024. 1. 9

Eastasia forum, [https://www.eastasiaforum.org/2023/05/14/japans-joining-](https://www.eastasiaforum.org/2023/05/14/japans-joining-mpia-an-outside-chance-to-boost-momentum-for-wto-reform/)

mpia-an-outside-chance-to-boost-momentum-for-wto-reform/ 검색일자:

2024. 1. 15

EC,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eu-and-wto_en)

ion/eu-and-wto_en, 검색일자: 2024. 1. 12

Kluwer Law International, [https://arbitrationblog.kluwerarbitration.com/2023](https://arbitrationblog.kluwerarbitration.com/2023/08/11/three-years-of-the-multi-party-interim-appeal-arbitration-arrangement-an-interim-evaluation-of-arbitration-as-a-means-to-appeal-wto-panel-reports/)

/08/11/three-years-of-the-multi-party-interim-appeal-arbitration-arrange-

ment-an-interim-evaluation-of-arbitration-as-a-means-to-appeal-wto-

panel-reports/ 검색일자: 2024. 1. 31

Permanent Mi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world-trade-organization](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world-trade-organization-wto/eu-statements-regular-dispute-settlement-body-meeting-30-june-2023_en?s=69)

-wto/eu-statements-regular-dispute-settlement-body-meeting-30-june-

2023_en?s=69 검색일자: 2024. 2. 9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https://www.rieti.go.jp/en/](https://www.rieti.go.jp/en/special/policy-update/112.html#note8)

special/policy-update/112.html#note8 검색일자: 2024. 2. 19

Tridge. [https://www.tridge.com/ko/news/restrictions-continue-against-costa-](https://www.tridge.com/ko/news/restrictions-continue-against-costa-rica-for-measu)

rica-for-measu 검색일자: 2024. 1. 16

Lexology,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23bc842-f240-4336-b6fd-f17604268624> 검색일자: 2024. 1. 30

USTR,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0/february/ustr-issues-report-wto-appellate-body>, 검색일자 2024. 2. 5

부록 1. 브라질 개정법 전문

(LEI Nº 14.353, DE 26 DE MAIO DE 2022)

Conversão da Medida Provisória nº 1.098 de 2022

Dispõe sobre procedimentos de suspensão de concessões ou de outras obrigações na hipótese de descumprimento de obrigações multilaterais por membro da Organização Mundial do Comércio (OMC); e altera a Lei nº 12.270, de 24 de junho de 2010.

Faço saber que o PRESIDENTE DA REPÚBLICA adotou a Medida Provisória nº 1.098, de 2022, que o Congresso Nacional aprovou, e eu, Rodrigo Pacheco, Presidente da Mesa do Congresso Nacional, para os efeitos do disposto no art. 62 da Constituição Federal, com a redação dada pela Emenda Constitucional nº 32, combinado com o art. 12 da Resolução nº 1, de 2002-CN, promulgo a seguinte Lei:

Art. 1º Esta Lei dispõe sobre procedimentos de suspensão de concessões ou de outras obrigações na hipótese de descumprimento de obrigações multilaterais por membro da Organização Mundial do Comércio (OMC).

Art. 2º Compete à Câmara de Comércio Exterior (Camex) suspender concessões ou outras obrigações do País, nas seguintes hipóteses de descumprimento de obrigações multilaterais por membro da OMC:

I - quando 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for autorizada pelo Órgão de Solução de Controvérsias da OMC a suspender a aplicação de concessões ou de outras obrigações para o referido membro previstas em acordos da OMC; ou

II - quando o relatório de grupo especial da OMC confirmar, no todo ou em parte, as alegações apresentadas pel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na condição de parte demandante, desde que:

- a) exista apelação pelo membro da OMC, na condição de parte demandada, nos termos do Artigo 17 do Entendimento Relativo às Normas e Procedimentos sobre Solução de Controvérsias, constante do Anexo 2 da Ata Final que Incorpora os Resultados da Rodada Uruguai de Negociações Comerciais Multilaterais do GATT, promulgada pelo Decreto nº 1.355, de 30 de dezembro de 1994;
- b) não possa a apelação ser apreciada pelo Órgão de Apelação ou não possa o relatório deste último ser aprovado pelo Órgão de Solução de Controvérsias da OMC; e
- c) tenha decorrido o prazo de 60 (sessenta) dias após notificação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ao membro da OMC demandado sobre a intenção de suspensão de concessões ou de outras obrigações.

Parágrafo único. Na hipótese prevista no inciso II do caput deste artigo, a suspensão de concessões ou de outras obrigações não será superior à anulação ou aos prejuízos causados aos benefícios comerciais do País pelo

referido membro da OMC.

Art. 3º No que se refere a medidas de suspensão de concessão ou de outras obrigações relativas a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será observado o disposto na Lei nº 12.270, de 24 de junho de 2010.

Art. 4º A Lei nº 12.270, de 24 de junho de 2010, passa a vigorar com as seguintes alterações:

"Art. 1º Esta Lei dispõe sobre medidas de suspensão de concessões ou de outras obrigações do País relativas aos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e outros, na hipótese de descumprimento de obrigações multilaterais por membro da Organização Mundial do Comércio (OMC), nas seguintes hipóteses:

I - 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for autorizada pelo Órgão de Solução de Controvérsias da OMC a suspender a aplicação de concessões ou de outras obrigações para o referido membro previstas em acordos da OMC; ou

II - o relatório de grupo especial da OMC confirmar, no todo ou em parte, as alegações apresentadas pel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na condição de parte demandante, desde que:

a) exista apelação pelo membro da OMC, na condição de parte demandada, nos termos do Artigo 17 do Entendimento Relativo às Normas e Procedimentos sobre Solução de Controvérsias, constante do Anexo 2 da Ata Final que Incorpora os Resultados da Rodada Uruguai de Negociações

Comerciais Multilaterais do GATT, promulgada pelo Decreto nº 1.355, de 30 de dezembro de 1994;

- b) não possa a apelação ser apreciada pelo órgão de Apelação ou não possa o relatório deste último ser aprovado pelo Órgão de Solução de Controvérsias da OMC; e
- c) tenha decorrido o prazo de 60 (sessenta) dias após notificação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ao membro da OMC demandado sobre a intenção de suspensão de concessões ou de outras obrigações.

Parágrafo único. Na hipótese prevista no inciso II do caput deste artigo, a suspensão de concessões ou de outras obrigações não será superior à anulação ou aos prejuízos causados aos benefícios comerciais do País pelo referido membro da OMC." (NR)

"Art. 10. As medidas de que trata esta Lei terão prazo determinado e serão adotadas somente enquanto perdurar a autorização do Órgão de Solução de Controvérsias da OMC, na hipótese prevista no inciso I do caput do art. 1º desta Lei, ou enquanto não puder ser concluída apelação nos termos do Artigo 17 do Entendimento Relativo às Normas e Procedimentos sobre Solução de Controvérsias, na hipótese prevista no inciso II do caput do art. 1º desta Lei.

부록 2. WTO 가입국 및 MPIA 가입국

〈부표 1〉 WTO 가입국 및 MPIA 가입국

WTO 가입국	MPIA 가입국
<p>가나, 가봉, 가이아나, 그리스,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도미니카 연방, 독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타, 미국, 미얀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벨기에, 벨리즈, 브라질, 브루나이, 세네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스리랑카, 스웨덴,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앤티가 바부다, 에스와티니,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간다, 우루과이, 유럽 연합,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잠비아, 체코, 칠레, 캐나다,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쿠웨이트, 탄자니아, 태국,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트리니다드 토바고, 짐바브웨,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튀르키예, 튀니지, 쿠바, 이스라엘,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기니비사우, 레소토,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몰디브, 보츠와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지부티, 토고, 부르키나파소, 이집트, 스위스, 폴란드, 과테말라, 부룬디,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의, 키프로스, 모잠비크, 리히텐슈타인, 니카라과, 볼리비아, 기니,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카타르, 피지, 에콰도르, 아이티, 세인트키츠 네비스, 그레나다, 베냉, 아랍에미리트, 르완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차드, 감비아, 앙골라, 불가리아,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몽골, 콩고 공화국의 기 콩고 공화국, 파나마,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요르단, 조지아, 알바니아, 오만,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중국, 중화민국,</p>	<p>호주,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니카라과, 우크라이나, 베닌, 코스타리카, 일본, 노르웨이, 우루과이, 브라질, 에콰도르, 마카오, 중국, 파키스탄, 캐나다, EU(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공화국,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멕시코, 페루, 몬테네그로, 싱가포르, 칠레, 홍콩, 과테말라, 뉴질랜드, 스위스</p>

WTO 가입국	MPIA 가입국
아르메니아, 북마케도니아, 네팔,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통가, 우크라이나, 카보베르데, 몬테네그로, 사모아, 러시아, 바누아투, 라오스, 타지키스탄, 예멘, 세이셸, 카자흐스탄, 라이베리아, 아프가니스탄, 코모로, 동티모르	

자료: WTO,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 검색일자: 2024. 3. 2

관세연구 23-03
WTO 상소기능 정지에 따른
MPIA의 주요내용 및 합의

발 행 2023년 12월 30일
저 자 고지현·노영예·양지영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주)세일포커스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ISBN 979-11-6655-285-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관세연구 23-03

WTO 상소기능 정지에 따른 MPIA의 주요내용 및 합의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